



공정거래위원회  
CCM인증



국가품질상  
KNQA인증

확인필-제 2025-일반업무지원-약관 02064E-전사(25.05.19~26.05.18)

# 한화 재산 종합보험 II

본 약관에 열거된 내용은 해당 상품에 담겨있는 전체 내용이며, 개별 계약에서 보장하는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해당 계약 보험증권에 명기된 약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화손해보험

##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후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후·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66-8000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http://www.hwgeneralins.com)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화번호 : (02) 316-7485</li><li>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 정보보호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화번호 : (02) 3702-8500</li><li>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화번호 : (02) 3145-5427</li><li>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li></ul>

###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http://www.hwgeneralins.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상담센터 및 지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주) 대표전화 02-2122-4000 / 홈페이지 [www.niceinfo.co.kr](http://www.nice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대표전화 1588-4753 / 홈페이지 [www.sci.co.kr](http://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대표전화 02-708-1000 / 홈페이지 [www.koreacb.com](http://www.koreacb.com)

**한화재산종합보험 II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 1

주요내용 요약서 ..... 2

보험용어 해설 ..... 4

주요민원사항 ..... 5

보험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 7

한화재산종합보험 II 보통약관 ..... 8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6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11조(청약의 철회)
- 제1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13조(계약의 무효)
-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16조(제1회 보험료등 회사의 보장개시)
- 제1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1조(계약의 해지)

제2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4조(보험료의 환급)

## 제7관 분쟁의 조정

제25조(분쟁의 조정)

제26조(관할법원)

제27조(소멸시효)

제28조(약관의 해석)

제2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1조(개인정보보호)

제32조(준거법)

제3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재산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8조(현물보상)

제9조(잔존물)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11조(준용규정)

## 기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8조(현물보상)

제9조(잔존물)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11조(준용규정)

## 기업휴지손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제4조(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익조항)
- 제5조(일부보험)
- 제6조(사업장별 적용조항)
- 제7조(보험가입금액의 복원)
- 제8조(기록의 보존)
- 제9조(누적재고조항)
- 제10조(정산청구조항)
- 제11조(준용규정)

## 배상책임손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제5조(보험금의 분담)
- 제6조(손해방지의무)
-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제8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제9조(양도)
- 제10조(조사)
- 제11조(준용규정)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한화재산종합보험 II 특별약관 .....	41
재산손해조항 특별약관 .....	41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41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44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44
실화(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48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약관 .....	53
소규모 공사 특별약관 .....	53
추가재산 확장담보 특별약관 .....	54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	54
공공기관 특별약관 .....	54
전문응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	55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특별약관 .....	55
내륙운송 담보 특별약관 .....	56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I	56
풍수재 부보장 특별약관	56
지진 부보장 특별약관	56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57
제조달가액 특별약관	58
실손보상 특별약관	59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59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60
소방비용 특별약관	60
냉동(냉장보관) 물품 특별약관	61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61
건설, 조립 후 가입조건 특별약관	61
Automatic Coverage Clause	62
Preservation of Property Clause	63
Output Replacement Clause	63
Outdated Equipment Clause	64
Unnamed Locations	65
Inland Transit	66
Control of Damaged Property and Branded Goods Clause	67
Special Clause for Minor Works	68
Debris Removal, Disposal & Cost of Clean-up Extension	70
All OTHER CONTENTS CLAUSE(FOR ALL OTHER CONTENTS)	71
STOCK DECLARATION CLAUSE (100% DEPOSIT)	72
STOCK VALUATION CLAUSE	73
EXTRA EXPENSE	73
Land Contamination or Pollutant Cleanup, Removal and Disposal	74
<b>기계손해조항 특별약관</b>	<b>75</b>
특별비용 특별약관	75
이동성 기계 특약(Hull Risk)	75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 특별약관	76
전구류 특별약관	76
연소엔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76
나선식 전기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추가약관	76
대형전동기 유지관리 추가약관	76
가스터빈 연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 추가약관	77
심정펌프 및 수증펌프 유지관리 추가약관	77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추가약관	77
전문 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78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78
냉동(냉장보관) 물품 특별약관	78
<b>기업휴지손해조항 특별약관</b>	<b>78</b>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II	78
수요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79
공급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79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79
Power Failure Clause (II)	80

Deficit Business Endorsement .....	80
STANDING CHARGES BASIS .....	80
PREMIUM ADJUSTMENT CLAUSE(BI) (II) .....	83
BUSINESS INTERRUPTION VOLATILITY CLAUSE(LMA5515) .....	84
Civil of Military Authority Extension(Business Interruption) .....	87
<b>배상책임손해조항 특별약관 .....</b>	<b>89</b>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89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용) .....	89
구내치료비 특별약관(학교경영자용) .....	90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 및 건설기계업자용) .....	91
인격침해담보 특별약관 .....	92
사회복지시설 종업원(근로자)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93
판매인 특별약관 .....	93
임차자 특별약관 .....	94
주차장 특별약관 .....	9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97
오염배상책임 특별약관 .....	97
구외선박배상책임 특별약관 .....	97
전염병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	98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특별약관 .....	98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특별약관 .....	99
생산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99
실리카 부담보 특별약관 .....	9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및 소음 부담보 특별약관 .....	99
전자파, 전자장(EMF) 부담보 특별약관 .....	99
무효력 부담보 특별약관 .....	100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	100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	102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 .....	102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초과담보 추가특별약관 .....	104
가스시설시공자 추가특별약관 .....	10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추가특별약관 .....	106
종업원(근로자)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	107
원자력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107
화재배상담보 특별약관 .....	108
재정적 손실 보장제외 특별약관 .....	108
모든비용의 보상한도액 내 포함 특별약관 .....	108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	108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108
사용자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110
가스공급 중단 또는 변동 특별약관 .....	110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110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II) .....	111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113
구내치료비지급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	114
주차장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	115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	116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	117

<b>일반조항 특별약관</b> .....	118
적용환율 특별약관 .....	118
공동인수 특별약관 .....	11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118
하나의 사고(72 시간) 특별약관 .....	119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119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119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120
CYBER LOSS LIMITED EXCLUSION CLAUSE (PROPERTY TREATY REINSURANCE) No.1 [LMA5410] .....	120
TERRITORIAL EXCLUSION ENDORSEMENT(BELARUS-RUSSIA-UKRAINE) .....	122
CYBER LOSS ABSOLUTE EXCLUSION CLAUSE .....	123
Sabotage and Terrorism Exclusion (NMA2919) .....	124
WEH Asbestos Exclusion Clause .....	125
Micro-Organism Exclusion Clause .....	126
CL356 Radioactive Contamination Clause .....	127
Downgrade Cancellation Clause .....	127
No Claim Bonus ( )% I .....	128
Testing and Commissioning Clause .....	129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PROPERTY TREATY (RE)INSURANCE) [LMA5394] .....	130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	130
Russia, Ukraine and Belarus territorial Exclusion [LMA5583A] .....	132
<b>한화재산종합보험 II 별표</b> .....	134
【별표1】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	134
【별표2】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액 .....	138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가) 신체보장 관련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 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나)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관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 2)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3) 화재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용어 해설

<b>보험약관</b>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b>보험증권</b>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b>보험계약 당사자</b>	<b>보험회사</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b>보험계약자</b>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b>보험계약 관계자</b>	<b>신체손해·비용손해 보상</b>	<b>피보험자</b>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b>보험수익자</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b>대리인</b>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b>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b>	<b>피보험자</b>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b>대리인</b>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b>보험료</b>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b>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b>	<b>보험목적</b>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b>보험가액</b>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보험가입금액</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b>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b>	<b>보험금</b>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b>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b>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b>환급보험료</b>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b>보험기간</b>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b>보장개시일</b>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b>보험계약일</b>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주요민원사항

### 1.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가. 비례보상 관련

##### 1) 사례

A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던 당시, 취급자로부터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사고발생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요율인상은 없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함. 얼마 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청구 접수하자, 피해목적물의 실제 재조달금액에 한참 미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불만을 제기함

##### 2) 유의(참고) 사항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보상처리함. 단,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재조달가액(피해 목적물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처리되며, 이는 보상처리의 기준이 변경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한 위험의 증가가 없으므로 요율의 인상은 없음.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보험에 의한 비례보상 원칙은 변함이 없으므로, 보상처리의 기준인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물건의 경우 약관상 80% 부보비율 충족시 이를 전부보험으로 보므로 해당 목적물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적용제외에 따른 환급보험료 관련

##### 1) 사례

A씨는 연말에 이르러, 연초에 가입한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제외 배서를 요청하였으나 환급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불만 제기함

##### 2) 유의(참고) 사항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중 적용제외할 경우의 환급보험료는, 요율서상 명시된 단기요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며, 특히 태풍으로 인한 풍수재사고발생 위험이 집중된 7월, 8월, 9월에 대하여는 각 월에 대하여 10%씩 가산하여 적용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계약의 풍수재위험담보에 대한 환급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상

#### 가. 상해보험 면책사항 관련

##### 1) 사례

전문등반을 취미로 하고 있는 A씨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산악동호회 회원들과 설악산 암벽등반을 하던중 추락하여 척추의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상해 후 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2) 유의(참고) 사항

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선박승무원 등 위험이 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함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등 해당 위험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나.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 1) 사례

A씨는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통원치료 후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국 처방조제비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손의료비 청구금액과 지급보험금이 달라 불만 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약관에 의거하여 통원의료비의 경우 요양기관의 분류에 따라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공제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입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

#### 다. 여행보험 가입 후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한도

##### 1) 사례

A씨는 신혼여행중 구입한 목걸이를 분실한 사고를 당하여,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함을 알고 불만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라. 여행보험 가입 후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상여부

##### 1) 사례

B씨는 1달간의 유럽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러 놓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계를 분실, 이에 귀국하여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대부분의 여행보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 마. 골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골프용품 도난 당한 경우 보상여부

##### 1) 사례

A씨는 평소 골프를 즐겨 골프장 내에서의 사고를 담보하는 골프보험을 가입하였고,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차량 트렁크안에 보관하던 골프채를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골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골프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골프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골프시설(골프장 또는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중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골프시설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보통약관에 정한 골프용품 손해 외에 골프장 구내에 위탁보관 중 또는 골프장 구내 밖의 장소에서 입은 골프용품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골프용품손해 확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여야함.

이 주요민원 사항은 통상적인 민원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상담센터(1566-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http://www.hwgeneralins.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http://www.fss.or.kr))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1. 재산손해조항 :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2. 기계손해조항 : 보험의 목적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
3. 기업휴지손해조항 :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재산손해조항 또는 기계손해조항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
4. 배상책임손해조항 :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100원(원금)+100원×10%(1년차이자)+[100원+100원×10%]×10%(2년차 이자) = 총121원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4. 보상 관련 용어

- 가.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② 재산손해조항, 기업휴지손해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기계위험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배상책임손해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 부문에 걸쳐 아래의 사항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생긴 손해 및 이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 유사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불문), 내란

나. 모반(謀叛), 민중 봉기에 달하거나 그 일부로 간주되는 소요(騷擾),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다. 테러행위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말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물리력은 병원균 및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사용 등을 포함 합니다.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라. 노동자의 파업, 철수, 태업 및 노동쟁의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사태

2. 가. 1)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2)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단, 회사는 점유박탈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손해원인에 관계없이 정부기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되게 되는 손해나 비용, 벌과금의 부담

다. 사기, 횡령 또는 협박 행위

3. 가. 핵무기 원료

나. 이온 방사, 핵연료로 또는 그 핵연료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연소 는 자체 핵융합 과정을 포함합니다.

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만,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형, 변조 또는 삭제. 단,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

6.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및 해석하는 과정상의 오류 및 불능

####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

법 포함)

3. 손해액의 조사 및 확정 에 필요한 장부나 회계서류 및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 자료, 설명서 등
4.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급보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한 경우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시설의 용도 또는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시설을 30일 이상 정비, 수리하거나 계속하여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 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 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1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일반조항 및 각 부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3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1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제2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21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약관 각 부문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2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4조(보험료의 환급)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4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재산손해조항 및 기계손해조항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25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2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31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3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재산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4. 운송 중인 상품이나 재물
- 5.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 중에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 6. 기계적 시험 또는 성능 시험과 그로 인한 기업휴지를 포함하여 건설 또는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 (testing or commissioning)이 진행 중인 재물.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정비를 위한 시운전과 시운전 재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 8.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살아 있는 생명체
- 9. 입목 또는 재배 중인 곡물
- 10. 토지(표토, 복토, 배수로, 옹벽, 배수거를 포함합니다.),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 11. 지하의 재물. 다만, 터널 및 그 내부의 파이프, 파이프내의 수용물, 전기시설 및 기초토목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 해상의 재물
- 13. 구내로부터 150m 범위 밖에 있는 송전선, 배전선 및 그와 관련된 구조물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마모 및 마멸, 점진적인 성능 및 기능 저하 또는 노후화, 부식, 금속 피로 현상,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작용, 자연발열 혹은 건조로 생긴 손해
2. 보험의 목적의 발효, 증발, 증량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로 생긴 손해. 단,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전류의 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로 생긴 손해.
4.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 또는 기타 장비의 작동불능, 고장, 오작동, 붕괴,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漏出), 오염(汚染) 및 오탁(汚濁)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회사가 보상하는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결과로 인한 누출, 오염 및 오탁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입은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의 공장설비, 기계, 파이프 라인 또는 기타 장비를 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지시에 따라 당해 설계허용치 및 안전하도를 초과하여 고의적으로 운전하여 생긴 손해
7. 토양의 전복, 침하, 사태, 수축, 팽창 또는 침식으로 생긴 손해
8. 부품, 재료, 제작, 설계상의 결함 또는 설계도 및 제작명세서의 결함 혹은 잠재적인 결함을 복구, 수리 또는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손해
9. 저장탱크, 용기, 기타 수용기기 내 수용물의 누출 또는 넘침으로 생긴 손해 및 보험 목적의 소각 및 폐기로 생긴 손해
10.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생긴 손해
11. 단, 상기 면책조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책조항의 원인에 기인하여 이 부문에서 보상하는 원인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⑤ 도난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경찰서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 제2호 손해방지비용, 제3호 대위권 보전비용 및 제4호 잔존물보전비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 제5호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 ④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반조정이 감안된 보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

②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X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④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위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기계손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2.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3.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4. 보일러의 급수부족
5.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6. 과·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등 전기적 원인
7. 진동, 조정불량, 부품의 느슨함, 분자력의 약화(Molecular fatigue), 원심력, 비정상적응력, 윤활 기능의 결함이나 급작스런 윤활유의 부족, 수격현상, 부분적 과열(폭발에 의한 보일러나 유사 장치의 경우는 제외),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결함, 연결기계의 오작동, 결함 등의 부적절한 가동
8. 기타 이 약관의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원인

②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로서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

거나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하여 가동중지, 분해, 임시가동 또는 동일사업장 구내에서 이동, 재조립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벨트, 와이어, 로우프, 체인, 고무타이어, 유리제품, 전기튜브 및 관구, 분쇄용 함마, 여과물질, 전열체, 철망, 대나무제품, 나무제품, 여과망, 노벽, 내화성 내장재 등 마모 또는 감가율이 높은 것
2. 절삭공구, 연마공구 기타 교환 가능한 치구(治具), 공구류 및 금형, 조형 기타 형류
3. 윤활유, 조작유, 연료, 냉매, 촉매, 수처리재료 등 운전 전에 제공되는 것. 그러나 변압기 또는 개폐기 안의 절연유 및 수은정류기 내의 수은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2.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이때 폭발은 터어빈, 콤프레셔, 엔진 실린더, 유압 실린더, 플라이휠, 기타 원심력을 받는 장치, 변압기 스위치, 오일잠금 스위치기어의 파열이나 균열을 제외하며, 파열은 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합니다.
3. 항공기 또는 비행체로부터 떨어진 물체 및 건물붕괴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쓰나미, 사태, 침강, 낙석,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낙석,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수조로부터 물이 새거나 넘침으로 인한 손해
5.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 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나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택표면의 긁힘으로 인한 손해
6. 서서히 진행된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박막, 흠 또는 결함있는 튜브 이음매나 여타 결함있는 이음매 또는 봉합선의 교정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목적물에 끼친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8.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9.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10.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적정 시간 동안 100% 설계용량으로 운전되기 이전에 생긴 손해 또는 직간접적으로 시운전(testing or commissioning) 기간에 생긴 사고와 관련한 손해
11.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또는 고의적인 과부하, 실험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의해 생긴 손해. 그러나 정상적인 가동 중지후의 재가동은 본 조항의 시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12. 기계의 사용손실 또는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13. 누출이나 오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기계장치의 손해 또는 사용손실 또는 누출, 오염 또는 오탁 물질의 제거, 중화 또는 청소비용
14.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토목공사와 석조물, 촉매, 연성기구, 절단기, 드릴, 연마기, 고아택기 또는 유사 품목이나 금형기, 분쇄기와 압밀기, 스크린과 체, 조형실린더, 로우프, 체인, 벨트,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벨트, 밧데리, 타이어, 접속 와이어와 케이블, 연성파이프, 접속 및 포장재료, 비철품목(전기제품의 절연체 제외), 연료, 필터, 냉각제, 윤활유 및 화공약품 또는 조작유 등 교환이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손해
15. 이 약관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하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

<용어 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인한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자기의 비용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를 입은 물건은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유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하였거나 위 제1항의 통지 후 7일 이내에 손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손해상황조사서, 수리견적서, 신품견적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부, 기타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또는 작동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임시 수리하여 사용 또는 작동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제6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인한 비용(이하 손해방지 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1항의 손해방지방비를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④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과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의 새로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의 가액(사업장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조달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 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이 제4항의 신조달가액에 부족하거나 초과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1회의 사고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규정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한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보험의 목적이 각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손해발생시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신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잔존물가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신조달가액}} - \text{자기부담금}$
---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신조달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전부손해인 경우 잔존물 철거비용

②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조달가액은 동종, 동능력의 신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요된 해체 및 재조립비용을 포함합니다. 어떤 품목이 수리 또는 대체되지 않은 경우, 손해사정의 기초는 그 재물의 실제 가액입니다.

③ 아래의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특별약관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공운임, 급행운임,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2. 임시수리비. 그러나 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되고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손상을 입은 부분을 수리함에 따라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4. 모양의 변경 및 개량으로 증가되는 비용

5.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분해, 정비, 건조, 청소비용 또는 응고, 막힘, 이 물체의 부착, 침수 등 이와 비슷한 상태를 제거하는 비용

④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 보험의 목적의 손상부분(부품)에 대해서 신구교환이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합니다.

⑤ 잔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⑥ 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인 경우, 손해발생 직전의 신조달가액에서 사용에 의한 감가를 공제한 것을 제1항의 1의 비용으로 하며 부분손해가 나더라도 수리비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기업휴지손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이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이 보험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또는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休止)되어 생긴 손해(이하 「기업휴지손해」라 합니다)를 이 부문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또는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문에 한하여 적용하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목별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생긴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법률 규제
2.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3.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촉 또는 재조달과 관련하여거나 조업의 재개 또는 계속과 관련하여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한 조업중단으로 증가된 손해
4. 공사 중의 작업에 기인된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휴지손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관은 예정이익의 상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과 특별비용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 :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중의 매출액이 표준매출액에 미달되어 생긴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특별비용: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다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보상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방

지 또는 경감된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총이익에 포함된 비용으로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보상기간 중에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되어 절약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뺍니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4조(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익조항)**

보상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이익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받을 금액은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 **제5조(일부보험)**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이익이 휴지기간 동안의 실제 총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증권의 총이익에 대한 실제의 총이익의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6조(사업장별 적용 조항)**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수행되고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영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이 약관의 규정은 손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각 사업장별로 독립으로 적용됩니다.

#### **제7조(보험가입금액의 복원)**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손해에 의해 소멸된 보험가입금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복원되며, 계약자는 그 날로부터 그러한 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8조(기록의 보존)**

피보험자는 최근 3년간의 재고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대차대조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훼손에 대비하여 이들 기록을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9조(누적재고조항)**

피보험자의 완제품 중 누적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이 유지됨에 따라 총이익 감소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총이익 감소지연 부분을 보상하는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10조(정산청구조항)**

① 피보험자는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 등으로 실제총이익이 예상총이익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산되는 보험료는 원래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상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준용합니다.

## 【 용어의 정의 】

### 1. 총이익

매출액과 기말 재고액의 합계액에서 기초 재고액과 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 재고액과 기말 재고액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회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 2. 특정변동비용

이 약관에 의해 보험가입되지 않는 변동비용으로서,

- ①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 ② 매입대금 (할인은 공제함)
- ③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의 경우 변동되어지는 여하한 비용을 말합니다.

### 3. 매출액

상품의 판매나 인도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금액 (할인은 공제함)

### 4.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보상기간은 피보험자의 조업에 영향을 미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그러나 보험자는 면책기간 동안에 생긴 손해액은 보상하지 아니하여 면책기간은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를 야기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시됩니다.

### 5. 총이익율

사고일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

### 6. 표준매출액

사고일 직전 12개월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 위 5, 6은 사업의 추세와 사고 전후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 7. 연간매출액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상 상태로 복구된 날 또는 보상기간이 끝나는 날 (먼저 발생한 것에 따릅니다)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 배상책임손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회사가 이 부문하에서의 화해액, 판결액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하였을 경우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2.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3.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 "재물손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② 추가지급조항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비용을 보상 합니다.

1.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신체장해 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보증보험료를 25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석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압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압해제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100한도 내의 소득상실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 판결의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판결확정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2.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a) "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b)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a)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b) 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c)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5. 아래와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a)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b) 위 (a)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b)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a)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 물질의 배출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1)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 (2)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 (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리 또는 가공하고 있는 경우
- (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직접, 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하고 있는 시설내 나 그 시설로부터
  -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 작업을 하였을 때

(b)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정부 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 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a)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 (b)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 (1) 길이가 26 feet 미만이고
  - (2)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 (c)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것이 아닌 "자동차"
- (d)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 (e) "이동장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 7 (b) 또는 7 (c) 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8.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a)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장비"의 운송
- (b) "이동장비"를 시험,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9.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10. 아래의 "재물손해"

- (a)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
- (b) 피보험자가 매각,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 (c)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
- (d)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산
- (e)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 (f) "피보험자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 "피보험자의 작업"의 대상이며 피보험자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 조항 (b)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면책조항의 (c), (d), (e), (f)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 (f)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1.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12.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피보험자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13.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 (a)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b)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서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 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다음의 사용 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 (a) "피보험자의 생산물"
  - (b) "피보험자의 작업"
  - (c) "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 (a)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 (b)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공.
17.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 (a)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 (b)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 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
18.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 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19.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정박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21. 구외선박배상책임과 관련하여 P&I에서 담보 가능한 해상 배상책임
22. 항공기 급유 관련 배상책임
23.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관리 중에 위험한 핵물질의 위험한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핵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원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기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a)란 및 (b)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기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a) 모든 원자로

(b)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기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c)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의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5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d)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시킬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특성"이란 방사성, 독성, 폭발성을 포함합니다. 재물의 손상이나 파괴와 관련하여 "손상"이나 "파괴"는 모든 형태의 방사능 오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부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

③ 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9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생산물	<p>「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p> <p>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p> <p>(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p> <p>(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p> <p>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p> <p>(1)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p> <p>(2)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p> <p>(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p>
손상재물	<p>「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호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p> <p>1. 가.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안전, 부적합 또는 위험</p> <p>나.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p> <p>2.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p> <p>나.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p>
보장지역	<p>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p> <p>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p> <p>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호의 국가로 또는 위 1호의 국가에서 위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호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p> <p>가. 위 1호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p> <p>나. 위 1호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p> <p>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p>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자동차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6종 중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p>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p> <p>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p> <p>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p> <p>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p> <p>(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p> <p>(2) 그레이더, 스크레퍼, 로올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p> <p>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p> <p>(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p> <p>(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p> <p>6) 위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p> <p>(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p> <p>(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p> <p>(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p>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보통약관 제5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함)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상 제1호를 초과하는 금액이 기재된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상 한도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부상의 보상한도는 1급 기준(화보법 시행령 [별표1] 참조)으로 비례하여 증가된 금액(제1호의 사망 및 후유장애의 금액 대비 보험증권상 사망 및 후유장애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意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span style="margin-left: 100px;">이 계약의 보상책임액</span>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이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실화(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보통약관 <재물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

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3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意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

으로 봅니다.

#### 제16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어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 중 및 대한민국의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를 통하여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담보장소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담보장소에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각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별 보상금액은 철거하기 이전의 장소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기계장치 및 공장시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소규모 공사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총공사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설, 조립 또는 증설공사 시에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이익의 상실 등 기업휴지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한도)

- ① 공사당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② 소규모 건설, 조립 또는 증설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별도의 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의 초과분만을 담보합니다.

####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증권의 제반조건에 따라 담보되는, 통상적인 작업(피보험자가 그러하다고 인정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유지 관리 또는 수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추가재산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추가된 재산에 대하여 그 추가된 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추가재산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재산이나 다른 보험계약 가입여부를 불문한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 제2조(보상한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제3조(추가재산 명세 제출 및 보험료 정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매회 추가재산에 대한 명세를 취득 또는 증가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보험기간 종료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기타 긴급한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손해 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 또는 대체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추가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공공기관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법규를 따르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경우로 생긴 추가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손해가 본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2.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해 사고 발생 이전에 시정조치 지시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내려진 경우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의 추가비용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전문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구하여야 할 경우,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기술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 용역비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 또는 조치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작업의 중단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
3. 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공권력의 지시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내륙운송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및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조건에 따라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I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외부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외부공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급자와 맺은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풍수재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불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지진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불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진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가입금액)

-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중 재고가액의 통지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보험가입금액을 증(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추가(환급)보험료를 납입(환급)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은 추가(환급)보험료 납입(환급)시점부터 적용합니다.
- ④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 )%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 제5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기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 기준으로 보험기간 만료후 4개월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 ③ 보험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통지된 월 재고가액은 정상 통지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은 월 재고가액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료 정산결과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가 동일한 경우, 이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보하며 이로써 보험료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같음합니다.

### 제6조(손해의 보상)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 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text{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 \times \frac{\text{최종통지 재고가액}}{\text{최종통지 재고가액 작성당시의 실제재고가액}}$$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text{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 또는 최종통지 재고가액 중 높은금액}}{\text{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⑤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 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 제1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재조달작업(보험자의 보상액이 증가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원하는 방법과 장소에서 재조달작업을 할 수 있음)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본 조항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되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2조(용어정의)

제1조의 재조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물이 전부 손해를 입은 때 : 건물의 경우에는 재축, 다른 목적물의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물로 대체. 단, 보상은 신문의 상태보다 개선되거나 더 우수하지 않은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목적물이 일부손해를 입은 때 : 손상된 부분의 수리나 복구. 단, 보상은 신문의 상태보다 개선되거나 더 우수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조항을 이유로 재축이나 복구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자에게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피보험자

가 재축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시의 목적물의 시가만을 보상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실손보상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하며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 제2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단, 재고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액의 보험증권에 명기한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로 대체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times \text{부보비율}}$$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에 이 특별약관의 적용이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가액)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합니다.

###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 제4조(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나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계약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소방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계약자가 부보 재산의 손해 확대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익하게 지출한 소방비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기타 제3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이 비용에는 소요된 자재비를 포함하되, 급여, 임금 그리고 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피보험자의 보조자에게 지급되는 이와 유사한 대가지불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냉동(냉장보관) 물품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보험은 증권 소재지 내에서 재산손해담보로 보상이 되는 사고로 인해 냉동기(냉장보관)의 기구나 집기의 파괴 또는 고장으로 인해 온도가 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한 냉동(냉장보관) 물건에 끼친 손해를 확장담보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산손해 담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손해 담보조항 제5조(지급보험료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재산손해 담보조항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건설, 조립 후 가입조건 특별약관

#### 제1조(가입조건)

- ① 이 보험은 건설, 조립, 해체, 개조, 시운전 또는 기계의 성능실험을 포함한 취역운전 중 생긴 재물의 손해 및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다음의 절차를 충분히 완료한 경우에만 본 증권에 가입하는 보험의 목적으로 봅니다.
  1. 시운전을 포함한 기계적 성능의 시험완료
  2. 시운전 및 취역운전
  3. 계약상 설계기준에 100% 부합하는 성능시운전. 성능시운전은 전 플랜트에 걸쳐 안정적이고 통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저 72 시간의 연속적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유보 또는 보증조건의 포기 없이 공식적인 인도에 뒤따른 피보험자의 공식적 승인. 장비의 결함이나 플랜트의 통합적 운영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은 모두 제거되고 임시구축물은 철거되고 수정작업은 완성하여야만 합니다.
- ③ 제2항은 통상적인 유지활동과 계획된 정비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재산손해 담보조항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Automatic Coverage Clause

#### 1) Future Handovers advised at inception

Reinsurers hereon automatically agree to include increases in values up to KRW TBA for ( ) and ( ) location, without agreement, subject to advise to Leading Underwriter within 10 days and a quarterly bordereau and pro rata additional premium payable at expiry (detailing attachment dates, increased amounts) to be advised to leading underwriter only.

#### 2) Automatic Cover: up to 120%

This policy shall automatically cover up to 120% of location value (accumulated value basis) without the Insured's prior notice subject to the scope of any newly acquired buildings, machinery and facility, subject to receipt of monthly bordereau within two months.

If the value of each location increases by more than 20% of sum insured per location, the Insured shall give an immediate notice for the particulars of such additions or increases of the value to the Company.

Relevant additional premium calculation shall be made as follows:

Additional Premium = Increased value X Premium Rate X [Expiry Date - Declaration Date] / 365

## 보험가입금액 자동 증액 조항

#### 1) 보험시기에 통지된 미래 양도물건

보험사는 ( ) 및 ( ) 소재지에 대하여 최대 KRW( )의 가입금액 인상을 자동으로 동의합니다. 단, 주보험사에 10일 이내에 통지 및 분기별 명세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만기시 추가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세부 날짜, 증액 금액) 은 주 보험사에만 통지됩니다.

#### 2) 자동 담보 : 120%까지

이 증원은 새롭게 취득한 건물, 기계 및 시설에 대하여 2개월이내에 월별 명세서를 고지하는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사전 통지 없이 소재지 가액(누적가액기준)의 120%까지 자동으로 담보합니다.

만약, 각 소재지의 가액이 소재지당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피보험자는 가입금액 추가 및 증액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추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추가보험료=증가된 가입금액 X 보험요율X(보험종기일자-통지일자)/365

## Preservation of Property Clause

In case of actual or imminent loss or damage insured herein,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Insured in taking all necessary and reasonable actions for the temporary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property insured hereunder shall be added to the total loss or damage otherwise recoverable herein and be subject to the applicable deductible and without increase in the sum insured contained in this policy.

### 재물손해 보호 비용 담보

실제 또는 급박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일시적인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증권상 보험가입금액 증액 없이 공제금액을 적용한 후 보상할 수 있는 손해에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 Output Replacement Clause

Where any Property Insured hereunder constitutes property which has a measurable function, capability or output and it is, or may become, necessary to replace such property with a new item or items which perform(s) a similar function or functions then such property shall be valued for insurance purposes as follows, and the value(s) for settlement of any claim in respect thereof shall be on the same basis:

- a) Where any Damaged Property Insured is to be replaced by an item or items which have the same or a lesser total function, capability or output, then the insurable value of such Damaged Property Insured is the new installed cost of such replacement item or items as would give the same total function, capability or output as the Damaged Property Insured, subject that the new installed cost of such replacement property is no greater than the replacement value of the Damaged Property Insured.
- b) Where any Damaged Property Insured is to be replaced by an item or items which have a greater total function, capability or output and the new installed cost of such replacement property is no greater than the replacement value of the Damaged Property Insured, then no deductions shall be made from any claim for the improved function, capability or output of the replacement property.
- c) If any Damaged Property Insured is to be replaced by an item or items which have a greater to

tal function, capability or output and the new installed cost of such replacement property is greater than the replacement value of the Damaged Property Insured, then the amount payable shall not exceed the sum insured of such Damaged Property Insured. Provided that where any Damaged Property Insured is to be repaired the Insurer(s) shall pay the cost of restoration of the Damaged Property Insured to a condition substantially the same as, but not better or more extensive than, its condition when new and the liability of the Insurer(s) shall not exceed the sum representing the cost which the Insurer(s) could have been called upon to pay if the Damaged Property Insured had been wholly destroyed.

## 출력장치 교체

이 보험증권에 부보된 재물이 측정가능한 기능, 능력 또는 출력을 가진 재물을 구성하고 그러한 재물을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새로운 재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재물의 가액의 평가는 아래와 같이 수행되어 지며, 손해사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a)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이 기능, 능력, 출력 면에서 동등 또는 기존에 못미치는 다른 재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동등한 기능, 능력 또는 출력을 가진 새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단, 그러한 대체품의 교체비용은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b)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이 기능, 능력, 출력 면에서 더 뛰어난 다른 재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교체비용은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체로 인하여 증대된 기능, 능력 또는 출력에 대하여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c)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이 기능, 능력, 출력 면에서 더 뛰어난 다른 재물로 교체되어야 하고, 그러한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교체비용은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목적물이 수리되어야 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해당 목적물을 신품 상태와 근본적으로 동일한(그보다 우월하거나 광범위한 수준이 아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책임은 해당 재산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면 지급을 요구 받았을 비용에 해당하는 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Outdated Equipment Clause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contract or any endorsement hereto, this special clause hereby shall define a method of indemnification on any equipment being insured under this policy on replacement cost basis which has suffered total loss due to insured perils,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when the insured has decided not to replace the totally damaged equipment with item of like kind and quality due to a rationale that the retention of the damaged equipment by replacing it with a new and similar piece does not serve any practical benefit due to technological inferiority of the damaged equipment at the time of loss in the course of the operating insured's business subject to being aligned with the nature of business, being similar to the insured's industry, the insured shall

ll be entitled to pursue new equipment with new and better technology and to replace the damaged equipment with the equipment of insured's choice at the place they may prefer, provided that

a) the insured's choice of equipment and its intended use shall be the one which doesn't fall outside the same nature of industry that insureds currently serves at the time of the loss.

b) the replacement shall be commenced within 12 months of date of the loss. The insurer's liability shall in no case exceed the amount representing the cost which insurers would have paid if the insured had chosen to procure the equipment with like kind and quality of the damaged equipment.

c) the insurer shall in no case pay the difference which may arise from the insured choosing to pursue advanced technology over replacing the totally damaged equipment with the one with like kind and quality even if advanced technology equipment costs less than the old equipment.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remain unchanged.

## 구형장비 담보 조항

보험증권 및 담보조건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조항은 다음조건에 따라 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전체손실을 입은 보험에 가입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재조달가액기준으로 보상하는데 동의합니다.

피보험자가 손상된 설비를 신품 또는 유사품으로 교체하여 보유하는 것이 기술적인 열세로 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손실을 입은 설비를 동종, 동능력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손실된 장비가 피보험자의 산업과 유사한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새롭고 더 나은 기술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 권리가 있으며 아래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선택한 장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a) 피보험자의 장비 선택 및 의도된 용도는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동일한 산업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 b) 교체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손상된 장비와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장비로 조달하기로 선택했다면 지불했을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c)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완전히 손상된 장비를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장비로 교체하는 것보다 첨단기술을 추구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차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본 특약 외 모든 보험조건은 보험증권에 따릅니다.

## Unnamed Locations

Coverage is extended to cover loss or damage to Property not otherwise excluded, at any Unnamed location not specifically described in a Schedule of locations on file with the Company. Coverage is extended to cover loss or damage to Property including Stock/Inventory not otherwise excluded.

## 명기되지 않은 사업장

이 추가담보조항은 보험회사에 제출된 소재지의 스케줄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비명기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보험증권에 별도로 제외하지 않은 재물에 발생하는 손해 및 손상에 확장하여 보장합니다. 이 담보조항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재고동산/재고를 포함하여 재물에 대한 손해나 손상을 확장하여 담보하여 드립니다.

### Inland Transit

This policy is intended to cover Inland Transit. This policy does not cover transit via marine transport or air transport.

#### a) Property in transit

This policy attaches and covers shipments within and between the territorial limits of this policy, including the inland waterways and coastal waters, by any means of conveyance, from the time the property is moved for purpose of loading and continuously thereafter while awaiting and during loading and unloading and in temporary storage, including temporary storage on any conveyance intended for use for any outbound or used for inbound shipment, including during deviation and delay, until safely delivered into place of final destina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Perils Insured", this clause insures against all risk of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including general average, salvage, and all other charges on shipments covered hereunder, except as hereinafter excluded.

#### b)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cover loss or damage to property :

(1) sold and shipped by the Insured under terms of F.O.B. point of origin or other terms usually regarded as terminating the shipper's responsibility short of points of delivery.

(2) arising out of any unauthorised person(s) representing themselves to be the proper party(ies) to receive goods for shipment or to accept goods for delivery.

(3) occasioned by the acceptance by the Insured, by its agents, or by its customers of fraudulent bills of lading, shipping and delivery orders, or similar documents.

c) (1) The Insured may waive right(s) of recovery against private and contract carriers and accept bills of lading or receipts from carriers, bailees, warehousemen, or processors limiting their liability, but this transit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any carrier, bailee, warehouseman or processor. (2) With respect to shipments made under F.O.B. or similar terms, this Insurer agrees to waive its rights of subrogation against consignees at the option of the Insured.

d) The Insured is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s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e) Seaworthiness of any vessel or watercraft is admitted between this Insurer and the Insured.

## 내륙운송조항

이 보험증권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내륙운송위험을 담보합니다. 단,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a) 운송 중 재물

이 보험증권은 연안운송 및 내륙수로운송을 포함하여 여타의 운송수단에 의해 담보지역 내 또는 담보지역 간에 발생하는 운송 중 재물을 담보합니다. 부보 개시 시점은 운송을 위한 재물이 상차의 목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시점이며, 운송을 시작 한 후 외부로 또는 내부로 운송을 위한 여타의 운송수단 내 임시보관 및 임시보관 장소에서의 대기, 상차 및 하차 간에도 담보는 계속됩니다. 운송 중 재물에 대한 담보는 운송경로의 변경 및 지연의 상황에도 적용되며, 운송 중 재물이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4.3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인”에도 불구하고 운송 중인 피보험 재물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해손, 구조료 및 여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여타의 물리적 손해 또는 손실을 담보합니다. 단, 달리 명기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b) 이 보험증권은 운송 중 재물에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담보합니다.

(1) FOB Point of Origin 또는 인도지에 미치지 못하여 송하인의 책임을 소멸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운송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하여 판매 및 운송되는 경우

(2) 인가되지 않은 일방당사자가 스스로를 피보험목적물의 운송 또는 피보험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인수에 적합한 대리인으로 대변하는 경우

(3)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에이전트 또는 피보험자의 고객에 의하여 사기성 선하증권의 인수, 사기성 인도지시서의 인수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의 인수

c) (1) 피보험자는 사적운송인 또는 계약운송인에 대한 회수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운송인, 수탁인, 창고업자 또는 여타의 처리자로부터 선하증권의 인수 또는 기타의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은 운송인, 수탁자, 창고업자 또는 여타의 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FOB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조건에 의한 운송과 관련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수하인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 피보험자는 Lightermen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합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e) 여타 선박의 내항성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만 용인됩니다.

## Control of Damaged Property and Branded Goods Clause

This Policy gives control of insured property that suffers insured physical damage as follows:

1. The Insured will have full rights to the possession and control of damaged property in the event of insured physical damage to such property provided proper testing is done to show which property is physically damaged.

2. The Insured using reasonable judgment will decide if the physically damaged property can be reprocessed or sold.

3. Property so judged by the Insured to be unfit for reprocessing or selling will not be sold or disposed of except by the Insured, or with the Insured's consent.

4. Any salvage proceeds received will go to the:(a) Underwriters at the time of loss settlement; or

(b) Insured if received prior to loss settlement and such proceeds will reduce the amount of loss payable accordingly.

## 손상재물 및 상표부착상품 통제 조항

이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목적물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제권한이 부여됩니다.

1. 이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목적물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피보험목적물의 판별과정을 거쳐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전적인 점유 및 통제 권한을 갖습니다.
2. 피보험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재처리 혹은 판매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의 재처리 혹은 판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나 피보험자의 자력에 의하여만 해당 목적물을 판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4. 잔존물의 판매 또는 폐기를 통하여 회수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 곳에 지급됩니다.
  - (a) 보험회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
  - (b) 피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그러나 잔존물의 판매 또는 폐기를 통하여 회수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

## Special Clause for Minor Works

1.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this Policy,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Policy automatically includes cover for alterations and/or construction and/or re-construction and/or testing and/or re-testing and/or erection and/or addition and/or maintenance and/or repair and/or modifications and/or internal removal and/or installation and/or dismantling work (hereinafter within this extension termed Minor Works) carried out by or on behalf of the Insured whether commenc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or prior to the Period of Insurance.

This extension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any types of aforementioned works carried out in the normal course of operations.

2. The cover applies only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and only in respect of minor work which have a full completed insured value of ( ) or less at inception of the minor work,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Insured and Insurers.

3. The cover for minor works is applied to;

- a. Building and its facilities : each of separated buildings on the insured's existing business premises.
- b. Cleanroom : each of separated ones operat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on the insured's existing business premises.
- c. Machinery : each of unit or a group of units, which are physically separated-It is possible to tes

t and produce independently, even parts-by each of the process. These utilities or machinery should have an influence on product or productivity capacity of the existing utilities or machinery as connecting the processes.

d. All three above can be applicable separately and in other cases there are subject to mutual agreement by the Insured and Insurers.

4. “Minor Works Clause” of Special Extensions applicable to Section I in Section I is deleted.

5. The cover afforded by this clause shall only apply in excess of a more specific insurance such as CAR policy or EAR policy and other similar policies , if any, arranged in respect of minor works.

6. It is specifically agreed that no liability shall attach to this Policy in respect of Advanced Loss of Profits arising out of the cover provided by this Extension.

7.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debris removal expense due to Minor Works is not covered in this clause.

## 소규모 공사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험증권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에는 보험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앞서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수행된 변경, 건설, 재건축, 테스트, 조립, 추가, 유지보수, 건물내 철거, 설치, 철거 작업 (이후 상기 작업은 본 추가조항에서 소규모 공사라고 정의)은 자동적으로 담보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은 정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수행되는 앞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확장담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동안에 한하며 그리고 소규모 공사 작업개시 시점에 전체 완성된 가액이 (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3. 소규모 공사에 대한 담보는 아래에 적용됩니다.

a. 건물 및 부대설비 : 피보험자의 사업장 구내에 있는 각각의 건물

b. 클린룸 : 피보험자의 사업장 구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분리된 공간

c. 기계장치 : 각 공정별로 독립적 부품까지 테스트 및 생산이 가능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각의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이러한 유틸리티 또는 기계장치는 공정을 연결하여 기존 유틸리티나 기계장치의 제품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d. 위의 세가지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사 상호 합의에 따릅니다.

4. 본 소규모 공사담보 추가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1부분 확장담보조항의 “소규모 공사 조항”은 삭제됩니다.

5.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담보는 소규모 공사와 관련하여 가입한 CAR(건설공사보험) 또는 EAR(조립보험) 증권과 그와 유사한 보험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담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예정이익담보와 관련하여 본 증권은 어떠한 책임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7. 달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소규모 공사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은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않

습니다.

## Debris Removal, Disposal & Cost of Clean-up Extension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policy to the contrary,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policy is amended to extend to cover all costs and expenses reasonably incurred up to any sub-limit stated in the schedule or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if not shown, in respect of clearing debris and removal and/or disposal of property whether damaged or undamag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i) removal, storage, transportation including loading & unloading, and/or disposal of debris of whatever kind whether the activities occur within or outside the covered premises;
- (ii) shoring up, propping and underpinning of Property Insured and the property of others;
- (iii) clearance of drains and sewers;
- (iv) other temporary repairs;
- (v) erecting and maintaining hoardings deemed required by the Insured during demolition;
- (vi) the demolition, dismantling and removal of any property belonging to the Insured or for which the Insured is responsible, provided that:

(1) such property is no longer useful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intended; or (2) such demolition and removal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the reinstatement or replacement of Property Insured under this section; or (3) such demolition and removal is ordered by an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r other Statutory or Competent Authority;

consequent upon physical damage to the property insured by any peril or occurrence not hereby excluded by this Policy.

It is also agreed that no payment shall be made under this extension if an occurrence involving physical damage to the insured property by any perils not excluded by this policy produces no insurance proceeds due to the operation of deductible.

In no case, this clause shall increase insurer's liability in excess of limit of liability and/or sum insured amount of the policy stated in the schedule. The insured shall notify the insurer of an intent to claim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physical damage or loss.

### 잔존물제거, 철거 및 청소비용 추가특별약관

보험증권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에 명시된 한도 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책임한도 내에서 잔존물 청소, 손상여부에 관계없는 철거 또는 제거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담보합니다.

다음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작업이 담보하는 구내/외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잔존물의 제거, 보관, 적재 및 하역을 포함한 운송, 처리
- (ii) 피보험 목적물 및 제3자의목적물의 지지,
- (iii) 배구수 및 하수도의 청소

(iv) 기타 임시수리

(v) 철거하는 동안 피보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시울타리 설치 및 유지

(vi) 피보험자 소유이거나 피보험자가 책임지는 재산의 철거, 해체 및 제거

아래 조건 하에 상기 사고는 본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 또는 사고로 인해 보험에 가입된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1) 해당 자산이 의도한 목적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러한 철거 및 제거가 재물손해부문의 피보험목적물의 교체 및 목적에 필요한 경우

(3) 그러한 철거 및 제거가 정부, 지방정부 또는 법정 또는 관할당국에 의해 명령된 경우

본 확장담보는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재산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확장담보는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또는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그러한 물리적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의사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ALL OTHER CONTENTS CLAUSE(FOR ALL OTHER CONTENTS)

NOTWITHSTANDING TERMS & CONDITIONS, THIS POLICY EXTENDS TO INCLUDE.

(A) MONEY NOTES, SECURITIES AND STAMPS, ACCOUNTS, BILLS, CURRENCY, DEEDS, EVIDENCE OF DEBT AND VALUABLE PAPERS FOR AN AMOUNT NOT EXCEEDING \_\_\_\_\_ AT ANY ONE PREMISES

(B) DOCUMENTS, MANUSCRIPTS AND BUSINESS BOOKS BUT ONLY FOR THE VALUE OF THE MATERIALS TOGETHER WITH THE COST OF CLERICAL LABOUR AND COMPUTER TIME EXPENDED IN REPRODUCING SUCH RECORDS (EXCLUDING ANY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OF INFORMATION OF INFORMATION TO BE RECORDED THEREIN)AND NOT FOR THE VALUE TO THE INSURED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FOR AN AMOUNT NOT EXCEEDING \_\_\_\_\_.

(C) COMPUTER SYSTEM RECORDS BUT ONLY FOR THE VALUE OF THE MATERIALS TOGETHER WITH COST OF CLERICAL LABOUR AND COMPUTER TIME EXPENDED IN REPRODUCING SUCH RECORDS(EXCLUDING ANY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TO BE RECORDED THEREIN)NOT FOR THE VALUE TO THE INSURED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FOR AN AMOUNT NOT EXCEEDING \_\_\_\_\_THE INSURANCE APPLIES TO COMPUTER SYSTEM RECORDS EXTENDS TO COVER SUCH PROPERTY FOR AN AMOUNT NOT EXCEEDING 10% OF THE LIMIT OF LIABILITY THEREON WHILST TEMPORARILY REMOVED TO ANY PREMISES NOT IN THE INSURED'S OCCUPANCY AND WHILST IN TRANSIT AND THEREFROM BY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D) PATTERNS, MODELS, MOULDS, PLANS AND DESIGNS.

## 다른 목적물 조항

이 보험증권의 반대되는 조건 및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항에 따라 다음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A) 1 부보소재지 당 \_\_\_\_\_을 한도로 화폐(채), 유가증권, 인지, 계좌, 지폐, 통화, 증서, 부채 관련 입증 문건 등

(B) 문서, 원고, 회계 장부로 해당 자료의 재료에 대한 가치와 이와 같은 기록을 재생산 했을 때 드는 컴퓨터 시간과 노동력의 비용에만 해당(정보 생산에 대한 비용은 제외). 그리고 포함된 정보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 또 \_\_\_\_\_을 초과할 수 없음

(C) 컴퓨터 시스템 기록으로 해당 자료의 재료에 대한 가치와 이와 같은 기록을 재생산 했을 때 드는 컴퓨터 시간과 노동력의 비용에만 해당. (정보 생산에 대한 비용은 제외). 그리고 포함된 정보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 또 \_\_\_\_\_을 초과할 수 없음

(D) 패턴, 모델, 금형, 계획, 설계

## STOCK DECLARATION CLAUSE (100% DEPOSIT)

The premium paid by the Insured for stock described in the Schedule being provisional premium shall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extension.

1) The Insured shall declare the value of the stock on the last day of each quarterly reporting period in writing to the Company within 30 days thereafter and if a declaration be not so given the sum insured showed in the Schedule shall be deemed to be the declared value of the said stock.

2) If the value of the stock insured exceeds the sum insured showed in the Schedule, in event of loss or damage, the Company shall settle the claim in the following manner.

Sum Insured/ Actual Value of Stock × amount of loss – deductible = amount payable

3) A 100% deposit premium on sum insured is to be charged at inception of this Policy and adjusted on the average amount of stock to be declared upon expiration of this Policy. In the event the actual premium is more than the deposit premium, the Insured shall pay the difference, if less, the difference shall be repaid to the Insured. But no refund shall be more than 50% of the deposit premium.

4) 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under this Policy, the amount payable for such loss or damage shall be automatically reinstated from the time of the happening and the Insured shall pay an additional premium therefore calculated pro rata from the date of loss to the expiration of this Policy. This Clause is subject otherwise to the terms, conditions and exceptions of this Policy.

## 재고자산 통지 추가특별약관 (            % 예치 조건)

증권에 기재된 잠정보험료로 지불된 보험료는 본 확장담보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1) 피보험자는 매분기 말일의 재고가액을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재고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2) 보험사는 재고가액이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손실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사고당시 재고가액) - 자기부담금

3)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 %) 예치보험금 보험료는 본 증권의 개시 시점에 청구되며 본 증권의 만기 시 통보할 평균 재고가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실제 보험료가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 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예치금의 ( )% 이상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증권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지불해야할 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복원되며,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산출된 추가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동 조항은 해당 증권에서 정한 조건, 면책사항 등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 STOCK VALUATION CLAUSE

Notwithstanding the paragraph 1) & 2) of Stock Declaration Clause, even if the actual value of stock exceeds the declared value at inception, in the event of destruction of or damage to insured stock hereunder, the insurer shall cover the full amount of stock value on the condition that at adjusting on the expiry of each period of insurance the insured shall pay due premium for excess value on annual basis

### 재고가액 추가특별약관

재고자산통지 추가특별약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실제가액이 보험개시 시점에 통지한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기 시 연간 기준 그 초과한 가액에 대해 추가정산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자는 본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손해 또는 손실 전액을 담보합니다.

## EXTRA EXPENSE

1.Measurement of Loss: The recoverable EXTRA EXPENSE loss will be the reasonable and necessary extra costs incurred by the Insured of the following during the PERIOD OF LIABILITY:

- a. Extra expenses to temporarily continue as nearly normal as practicable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nd
- b. Extra costs of temporarily using property or facilities of the Insured or others; less any value remaining at the end of the PERIOD OF LIABILITY for property ob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 c. Additional Soft Costs related to construction projects.

2.EXTRA EXPENSE Exclusions: As respects EXTRA EXPENSE, the following are also excluded:

- a. Any loss of income.

- b. Costs that normally would have been incurred in conducting the business during the same period had no physical loss or damage occurred.
- c. Cost of permanent repair or replacement of property that has been damaged or destroyed.
- d. Any expense recoverable elsewhere in this Policy.

3.References and Application: The following term means:

Normal: The condition that would have existed had no physical loss or damage occurred.

## 추가비용

1. 손실의 측정 : 회수 가능한 추가비용 손실은 책임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이 부담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추가비용입니다.

- a. 피보험자의 사업수행을 가능한 한 거의 정상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추가비용 그리고
- b. 피보험자 또는 타인의 재산 또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추가비용;  
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험기간 말에 남아 있는 가치를 차감합니다
- c. 건설작업과 관련된 추가비용

2. 추가비용 면책사항 : 다음 항목은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a. 수입상실
- b. 물리적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였을 비용
- c. 손상되거나 파괴된 자산의 본수리 또는 교체 비용
- d. 이 증권의 다른 부분에서 회수가 가능한 비용

3. 참조 및 적용 : 아래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정상 : 물리적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상태

## Land Contamination or Pollutant Cleanup, Removal and Dis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um paid, and subject to the Exclusions,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to which this Extension is attached, this Policy is extended to cover the reasonable and necessary cost for the cleanup, removal and disposal of contaminants or pollutants from uninsured property consisting of land, water or any other substance in or on land at the insured location if the release, discharge or dispersal of contaminants or pollutants is a direct result of physical loss or damage to insured property by a peril insured against under this Policy occurring during the period of this Policy. This Policy does not cover the cost to cleanup, remove and dispose of contaminants or pollutants from such property:

- 1. at any location insured for personal property only;
- 2. at any property insured under any automatic acquisition, newly acquired property, errors and o

missions or miscellaneous unnamed location or similar coverage as maybe provided by this Policy;  
 3. when the Insured fails to give written notice of loss to the Underwriters within 180 days after the insured physical loss or damage. The Underwriters shall not be liable under this Extension for more than the sub-limit of {response} in respect of any one Occurrence and in the aggregate for the period of this Policy, which shall be part of and not in addition to the policy limit.

LMA5155 19 May 2010

## 토양 오염 또는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비용

추가보험료의 납부 및 이 확장조항이 첨부된 본 보험증권의 제면책, 제조건, 제한조항에 따라, 이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혹은 손해가 오염물질의 유출, 배출, 확산되는 경우, 이 확장조항에 따라 토지, 물 혹은 기타의 물질로 구성되고 부보소재지 내 토지에 있는 비부보자산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청소, 제거, 폐기하기 위해 소용되는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비용을 담보한다. 본 보험증권은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부터 오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정화, 제거,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1. 동산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된 장소
2. 본 증권에서 제공될 수도 있는 자동취득자산담보 및 신규취득자산담보, 오기 및 탈루담보, 비명기소재지담보, 기타 비명기소재지담보 혹은 이와 유사한 담보에 의해 담보되는 자산
3. 피보험자가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물리적 손실 혹은 손해가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보험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 보험의 전체가입기간동안 보험사고 한 건과 관련하여 본 확장조항에서 [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한도는 이 보험증권에서 제공하는 한도의 일부로써 포함되며, 본 증권 보험 한도에 추가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기계손해조항 특별약관

#### 특별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보통약관에서 부담하는 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되어 생긴 경우에 한합니다.

손해를 입은 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신조달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이동성 기계 특약(Hull Risk)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건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의 목적중 아래의 기계에 대하여는 홍수, 지진, 범람, 산사태, 지면의 내려앉음, 도난 및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 특약이 적용되는 기계에 대하여 그 사용장소(공장 또는 사업장)가 보험증권에 명기되어야 하며 도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계명 :

####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입은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의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배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그 감가상각율은 최저 연 25%로 하되 감가상각율의 총합계는 7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산업용 식도의 비전기용 케이블은 <기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 전구류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입은 전구류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전구류의 개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6개월 경과후, 실제가액은 매월 3%로 감가상각하되, 총합계가 8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연소엔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캠축, 실린더 라이너 등의 부속품과 피스톤을 포함한 실린더 헤드에 대해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최저 연 10%, 총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나선식 전기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나선식 전기코일에 대해서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전기기계에 대해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최저 연 5%, 총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대형전동기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전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8,000시간 운용 후이거나 500번의 시동 또는 마지막 분해작업 이후 2년 이내에 최소한 1회의 전체적인 개방에 의한 분해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는 적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새로운 전동기 작동후 2,000시간 후 또는 적어도 1년후에는 분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분해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기간이 개시일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분해검사동안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조건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가스터빈 연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스터빈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 가스배기관의 부품에 발생한 보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그 영향을 입은 부품에 대해 보험금은 감가상각합니다.

지급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부품의 총재조달비용} \times \left( 1 - \frac{\text{사용기간}^{\text{주1)}}}{\text{통산수명}^{\text{주2)}}} \right)$$

제조업자가 제시한 부품에 대한 통상적인 수명이 운영상 또는 사고경험과 다를 때 실질적인 수명에 관해서 계약자와 회사간 합의해야 하고 제조업자의 조언을 배제합니다.

- 주) 1. 사고시까지의 부품 사용기간
- 2. 제조업자가 발행한 최근의 사양서에 의한 부품의 통상적인 수명

### 심정펌프 및 수중펌프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수중펌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분해정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해정비하는 동안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의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적절한 시간에 정비검사에 대한 일정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모래의 침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작동을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우물의 붕괴, 관 또는 강화벽의 붕괴로 인한 손해 또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보일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또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안에 모든 보일러에 대하여 그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분해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적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기간의 개시일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검사 또는 분해작업 기간중에 보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 또는 유자격의 검사기관이 동의하고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전문 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구하여야 할 경우,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기술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 용역비는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나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계약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개인이나 회사, 법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냉동(냉장보관) 물품 특별약관

### 제1조(대위권)

이 보험은 증권 소재지 내에서 기계손해담보로 보상이 되는 사고로 인해 냉동기(냉장보관)의 기구나 집기의 파괴 또는 고장으로 인해 온도가 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한 냉동(냉장보관) 물건에 끼친 손해를 확장담보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기업휴지손해조항 특별약관

##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II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외부공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급자와 맺은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수요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및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1차 거래선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1차거래선은 피보험자의 수요처(피보험자로부터 상품, 제품, 부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1차거래선의 재산손실은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공급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및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1차거래선은 피보험자의 공급처(피보험자에게 상품, 제품, 부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1차거래선의 재산손실은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나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계약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개인이나 회사, 법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Power Failure Clause (II)

PD loss caused by damage to goods in process due to power failure is covered under Section I(PAR). However, BI loss consequent upon the damage to goods due to power failure is not covered under Section III(BI) except BI loss by reason of power failure due to a cause occasioned off the premises exceeding time excess ( )days.

### 정전 조항

정전으로 발생한 제품 손상으로 인한 PD (또는 MB) 손실은 섹션I(PAR) (또는 섹션II(MB))에서 담보됩니다. 그러나 정전으로 인한 제품 손상의 BI 손실은 면책일 \_\_\_\_\_ 일을 초과한 소재지 외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BI 손실을 제외하고는 섹션 III(BI)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단, 이 증권의 모든 조항, 조건 및 규정을 적용한 후에도 본 조항에 의거한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 총액 또는 메모로 명기된 기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Deficit Business Endorsement

In case of deficit business unit, the cover of business interrupt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standing charges basis not reflecting operating loss.

### 영업손실사업 보장 특별약관

영업손실 사업단위의 경우 기업휴지담보는 운영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비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STANDING CHARGES BASIS

(STANDING CHARGES BASIS is applied only when deficit business Endorsement is applied)

THE INSURANCE UNDER THIS CLAUSE IS LIMITED TO LOSS IN RESPECT OF INSURED STANDING CHARGES DUE TO (A) REDUCTION IN TURNOVER AND (B) INCREASE IN COST OF WORKING AND THE AMOUNT PAYABLE AS INDEMNITY

THEREUNDER SHALL BE :

(A) IN RESPECT OF REDUCTION OF TURNOVER : THE SUM PRODUCED BY APPLYING THE RATE PAYABLE TO THE AMOUNT BY WHICH THE TURNOVER DURING INDEMNITY PERIOD SHALL, IN CONSEQUENCE OF THE DAMAGE, FALL SHORT OF THE STANDARD TURNOVER.

(B) IN RESPECT OF INCREASE IN COST OF WORKING : THE ADDITIONAL EXPENDITU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MEMO 2) NECESSARILY AND REASONABLY INCURRED FOR THE SOLE PURPOSE OF AVOIDING OR DIMINISHING THE REDUCTION IN TURNOVER WHICH BUT FOR THAT EXPENDITURE WOULD HAVE TAKEN PLACE DURING THE INDEMNITY PERIOD IN CONSEQUENCE OF THE DAMAGE, BUT NOT EXCEEDING THE SUM PRODUCED BY APPLYING THE RATE PAYABLE TO THE AMOUNT OF THE REDUCTION THEREBY AVOIDED.

LESS ANY SUM SAVED DURING THE INDEMNITY PERIOD IN RESPECT OF SUCH OF THE INSURED STANDING CHARGES AS MAY CEASE OR BE REDUCED IN CONSEQUENCE OF THE DAMAGE, PROVIDED THAT IF THE SUM INSURED BY THIS CLAUSE BE LESS THAN THE SUM PRODUCED BY APPLYING THE RATE PAYABLE TO THE ANNUAL TURNOVER, THE AMOUNT PAYABLE SHALL BE PROPORTIONATELY REDUCED.

#### DEFINITIONS

INSURED STANDING CHARGES – THE AMOUNT OF UNDERMENTIONED INSURED STANDING CHARGES.

#### NET PROFIT

THE NET PROFIT (EXCLUSIVE OF ALL CAPITAL RECEIPTS AND ACCRETIONS AND ALL OUTLAY PROPERLY CHARGEABLE TO CAPITAL) RESULTING FROM THE BUSINESS OF THE INSURED AT THE PREMISES AFTER DUE PROVISION HAS BEEN MADE FOR ALL STANDING AND OTHER CHARGES INCLUDING DEPRECIATION, BUT BEFORE THE DEDUCTION OF ANY TAXATION CHARGEABLE ON PROFITS.

#### TURNOVER

THE MONEY PAID OR PAYABLE TO THE INSURED FOR GOODS SOLD AND DELIVERED AND FOR SERVICES RENDERED IN COURSE OF THE BUSINESS AT THE PREMISES.

#### INDEMNITY PERIOD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AND ENDING NOT LATER THAN ( ) MONTHS THEREAFTER DURING WHICH THE RESULTS OF THE BUSINESS SHALL BE AFFECTED IN CONSEQUENCE OF THE DAMAGE.

THE RATE OF GROSS PROFIT EARNED ON THE TURNOVER DURING THE FINANCIAL YEAR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THE DAMAGE.

#### RATE PAYABLE

THE PERCENTAGE THAT THE INSURED STANDING CHARGES BEARS TO THE TURNOVER DURING THE FINANCIAL YEAR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DAMAGE.

#### ANNUAL TURNOVER

THE TURNOVER WHICH THE INSURED WOULD HAVE BEEN ABLE TO OBTAIN BUT FOR THE ACCIDENT DURING THE TWELVE MONTHS IMMEDIATELY BEFORE EITHER THE DATE WHEN THE BUSINESS IS NO LONGER AFFECTED OR WHEN THE INDEMNITY PERIOD ENDS, WHICHEVER OCCURS FIRST.

## STANDARD TURNOVER

THE TURNOVER DURING THAT PERIOD IN THE TWELVE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THE DAMAGE WHICH CORRESPONDS WITH THE INDEMNITY PERIOD TO WHICH SUCH ADJUSTMENTS SHALL BE MADE AS MAY BE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TREND OF THE BUSINESS AND FOR VARIATIONS IN OR OTHER CIRCUMSTANCES AFFECTING THE BUSINESS EITHER BEFORE OR AFTER THE DAMAGE OR WHICH WOULD HAVE AFFECTED THE BUSINESS HAD THE DAMAGE NOT OCCURRED, SO THAT THE FIGURES THUS ADJUSTED SHALL REPRESENT AS NEARLY AS MAY BE REASONABLY PRACTICABLE THE RESULTS WHICH BUT FOR THE DAMAGE WOULD HAVE BEEN OBTAINED DURING THE

RELATIVE PERIOD AFTER THE DAMAGE.

MEMORANDUM 1 – IF DURING THE INDEMNITY PERIOD GOODS SHALL BE SOLD OR SERVICES SHALL BE RENDERED ELSEWHERE THAN AT THE PREMISES FOR THE BENEFIT OF THE BUSINESS EITHER BY THE INSURED OR BY OTHERS ON HIS BEHALF THE MONEY PAID OR PAYABLE IN RESPECT OF SUCH SALES OR SERVICES SHALL BE BROUGHT INTO ACCOUNT IN ARRIVING AT THE TURNOVER DURING THE INDEMNITY PERIOD.

MEMORANDUM 2 – IN COMPUTING THE AMOUNT RECOVERABLE HEREUNDER AS INCREASE IN COST OF WORKING THAT PROPORTION ONLY OF THE ADDITIONAL EXPENDITURE SHALL BE BROUGHT INTO ACCOUNT WHICH THE AMOUNT OF THE INSURED STANDING CHARGES BEARS TO THE SUM OF THE NET PROFIT AND ALL THE STANDING CHARGES.

## 경상비 기준 보상

이 조항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a)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부보경상비와 (b) 특별비용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a) 매출액의 감소 :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표준매출액에 미달된 매출감소액에 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b) 특별비용 :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메모 2 조항에 의함). 다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보상기간' 동안에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방지 또는 경감된 매출 감소액에 '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부보경상비에 포함된 비용으로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므로써 보상기간중에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되어 절약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조항 하의 보험가입금액이 연간매출액에 이익율을 적용시킨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보험금은 비례적으로 보상됩니다.

### 용어의 정의

부보경상비 - 아래에 명기된 부보경상비 총액

순이익 - 부보소재지 내에서 피보험자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상비 및 기타 제 비용을 충분히 계상한 후의 순이익(자본수익 및 자본지출은 제외)을 의미하여 세금공제 이전 금액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 상품의 판매나 인도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금액

보상기간 - 보상기간은 피보험자가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 )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익율 -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에 있어서 매출액에 대한 부보경상비 비율

연간 매출액 - 사고발생직전 12개월간의 매출액

표준매출액 - 사고일 직전 12개월로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

위의 이익율, 연간매출액, 표준매출액은 사업의 추세와 사고전후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없었더라면 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메모 1 - 보상기간 동안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이익을 위하여 증권의 명기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받을 금액은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모 2 - 특별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가비용은 순이익과 모든 경상비의 합계에 대한 부보경상비의 비율로 계산된 부분만이 계상됩니다.

## PREMIUM ADJUSTMENT CLAUSE(BI) (II)

THE FIRST AND ANNUAL PREMIUMS IN RESPECT OF GROSS PROFIT ARE PROVISIONAL, BEING 100% OF THE PREMIUMS PAYABLE AT THE COMMENCEMENT. THE PREMIUM PAID SHALL BE ADJUSTED ON RECEIPT BY INSURERS OF DECLARATION OF GROSS PROFIT EARNED DURING THE FINANCIAL YEAR MOST NEARLY CONCURRENT WITH THE PERIOD OF INSURANCE, TO BE CONFIRMED BY THE INSURED 'S AUDITORS IF SO REQUIRED BY INSURERS. IF ANY DAMAGE SHALL HAVE OCCURRED GIVING RISE TO A CLAIM FOR LOSS OF GROSS PROFIT THE ABOVE MENTIONED DECLARATION SHALL BE INCREASED BY INSURERS FOR THE PURPOSE OF PREMIUM ADJUSTMENT BY THE AMOUNT BY WHICH GROSS PROFIT WAS REDUCED DURING THE FINANCIAL YEAR SOLELY IN CONSEQUENCE OF THE DAMAGE. IF THE DECLARATION (ADJUSTED AS PROVIDED FOR ABOVE AND PROPORTIONATELY INCREASED WHERE THE MAXIMUM INDEMNITY PERIOD EXCEEDS 12 MONTHS)

(A) IS LESS THAN 100% OF THE DECLARED VALUE FOR GROSS PROFIT FOR THE RELATIVE PERIOD, THE INSURERS WILL ALLOW A PRO RATA RETURN OF PREMIUM.

(B) IS GREATER THAN 100% OF THE SUM INSURED ON GROSS PROFIT FOR THE RELATIVE PERIOD, THE INSURED SHALL PAY A PRO RATA ADDITIONAL PREMIUM.

BY THE ABOVE (A) AND (B), THE INSURER SHALL NOT LIMIT THE DAMAGES TO THE GROSS PROFIT DECLARED AND INSURED AT INCEPTION.

IN THE EVENT NO DECLARATION WITHIN 6 MONTHS AFTER THE EXPIRY OF SUCH PERIOD OF INSURANCE IS RECEIVED, ANY OF RETURN PREMIUM SHALL NOT BE PAID.

## 기업휴지부문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총이익과 관련된 최초의 연간 보험료는 보험개시일에 지불해야 할 보험료의 ( )%로서 잠정보험료이며, 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피보험자는 감사인에 의해 확정된, 보험기간과 가장 가까운 회계연도 12개월간의 총이익을 보험자에게 확정고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이익상실손해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의 결과로 그 회계연도 기간 동안 줄어든 총이익금액을 보험료 정산 목적을 위하여 상기 확정고지된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확정고지금액(상기 및 최대보상기간이 12개월 초과할 경우 비례적으로 증액시킨 금액)이

(a) 최초 고지금액의 ( )%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된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

(b) 최초 고지된 금액 ( )%를 초과할 경우, 일할계산한 추가보험료를 추징

상기 (a), (b) 따라 보험사는 보험개시에 가입하고 보고한 총이익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산통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환급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BUSINESS INTERRUPTION VOLATILITY CLAUSE(LMA5515)

For use on Oil, Gas and Petrochemical Contracts

1. Subject to the other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Insurance:

1.1 the Annual Cap for business interruption indemnity shall be \_\_\_\_\_% of the declared annual business interruption value of the Location(s) suffering:

1.1.1 Damage; or

1.1.2 a business interruption loss resulting from Damage at another Location(s) or the property of a customer or supplier, including utilities and services.

1.2 the Monthly Cap for business interruption indemnity shall be \_\_\_\_\_% of the declared monthly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of the Location(s) suffering:

1.2.1 Damage; or

1.2.2 a business interruption loss resulting from Damage at another Location(s) or the property of a customer or supplier, including utilities and services.

Separate Annual Caps with percentages equal to the Annual Cap shall additionally apply to any other Location(s) suffering a business interruption loss resulting from such Damage, based on the relevant declared annual business interruption value of each affected Location(s).

Separate Monthly Caps with percentages equal to the foregoing outlined Monthly Cap percentage shall additionally apply to any other Location(s) suffering a business interruption loss resulting from such Damage, based on the relevant declared monthly business interruption value of each affected Location(s).

In the absence of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declared on a monthly basis, monthly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used to calculate the Monthly Cap shall equal the declared business interruption value

e pro-rated to provide a monthly value.

2. If the values are declared for a period which is more, or less, than one year, then the annual value shall be calculated on a pro-rata basis.

3. The Annual Cap or Monthly Cap shall apply for interruption periods as follows:

3.1 For interruptions equal to or less than 10 months from the date of Damage the Monthly Cap applicable to each monthly period of the interruption shall apply.

3.2 For interruptions of greater than 10 months bu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Damage, the Annual Cap shall apply.

3.3 For interruptions greater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Damage and where the values are declared on a monthly basis, the Annual Cap shall apply to each full period of greater than 10 months but less than 12 months and the Monthly Cap shall apply for any subsequent period equal to or less than 10 months.

4. Subject to the other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Insurance,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can be updated by the (Re)Insured and agreed by the (Re)Insurers in writing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and the re-declared values shall then apply for the remainder of the Period of Insurance subject to any subsequent re-declarations. The premium will be adjusted in proportion to the change in values declared at the time of re-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Re)Insurance.

Unless specified elsewhere in this (Re)Insurance, the premium adjustment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shall be calculated at the business interruption rates applied at policy inception in proportion to the change in values declared, for the portion of the Period of Insurance which is subject to the re-declaration.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Location(s) suffer business interruption, the business interruption indemnity caps for each Location(s) suffering a business interruption loss under paragraphs 1.1 and 1.2 shall be based on the declared values at the time of the Damage.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redeclared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the effect of any loss notified under the original policy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Where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are redeclared to zero at a Location(s), then any coverage under the business interruption section would also cease for this Location(s).

All additional premium or return of premium resulting from re-declarations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shall be reconciled at the policy expiry and the resulting payment made within 60 days unless otherwise agreed.

5. In the event that the original policy includes a business interruption premium adjustment provision based on retrospective business interruption values at policy expiry or similar, this clause overrides such provision.

## Definitions

6.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are as follows:

6.1 Damage shall be defined as contained within the original policy.

6.2 Location(s) shall mean the location or locations listed in the Schedule.

6.3 Period of Insurance shall be defined as contained within the original policy.

LMA5515 27 November 2020

## 기업휴지 변동성조항(LMA5515)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계약에 적용

1. 이(재)보험의 기타 약관, 조건 및 제한사항에 따라:

1.1 기업휴지 보상에 대한 연간보상한도는 다음을 겪고 있는 소재지의 고지된 연간 기업휴지가액의 \_\_\_\_%입니다

1.1.1 손해; 또는

1.1.2 유틸리티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구매자 또는 공급업자의 재물 또는 다른 소재지의 손해로 기인된 기업휴지 손해

1.2 기업휴지보상에 대한 월간 한도는 다음을 겪고 있는 소재지의 고지된 월간 기업휴지가액의 \_\_\_\_%입니다.

1.2.1 손해; 또는

1.2.2 유틸리티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구매자 또는 공급업자의 재물 또는 다른 소재지의 손해로 기인된 기업휴지 손해

해당 손해로 인해 기업휴지손해를 입은 다른 소재지에 대해서는 각 소재지별로 고지된 연간 기업휴지가액에 상기 1.1의 연간한도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별도 연간 한도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손해로 인해 기업휴지손해를 입은 다른 소재지에 대해서는 각 소재지별로 고지된 월별 기업휴지가액에 상기 1.2의 월별한도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별도 월별 한도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월 기준으로 고지된 기업휴지가액이 없는 경우, 월간 한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월간 기업휴지가액은 월별 가액을 제공하기 위해 비례배분된 신고된 기업휴지손해가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2. 가액이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지된 경우 연간가액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3. 중단기간에 대한 연간 한도 또는 월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3.1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개월 이하의 중단인 경우 중단의 각 월기간에 적용될수 있는 월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3.2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개월 초과 12개월 미만의 중단에 대해서는 연간한도가 적용됩니다.

3.3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중단되고 가액이 월 단위로 고지되는 경우, 연간한도가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각 전체기간에 적용되며 후속의 10개월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월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4. 본 (재)보험의 기타약관, 조건 및 제한사항에 따라, 기업휴지가액은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동의하에 의해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재고지된 가액은 후속 재신고에 따라 나머지 보험기간동안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이(재)보험의 조건에 따라 재고지시 고지된 가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이 (재)보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료 조정은 다음과 같은 보험기간 부분에 대해 신고된 가액의 변경에 비례하여 보험개시시 적용되는 기업휴지손해담보 요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업휴지가 발생한 소재지의 경우, 제1.1항 및 제1.2항하의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각 소재지별의 기업휴지 손해담보 한도는 손해 당시의 고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고지된 기업휴지가액을 계산할 때 원 보험증권에 따라 통지된 손실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업휴지 가액이 0으로 재고지된 소재지의 경우 기업휴지손해담보에 따른 모든 담보도 이 소재지에 대해 중단됩니다.

보험기간 중 재고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추가보험료 또는 환급보험료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보험기간 만료 시 조정되고 그에 따른 지불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5. 원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만료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소급 기업휴지가액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휴지 보험료 조정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 조항이 해당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 정의

6. 이 조항의 목적에 대한 정의 다음과 같습니다

6.1 손해는 원 보험증권내에 내포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6.2 소재지는 명세서에 기재된 소재지들을 의미합니다

6.3 보험기간은 원 보험증권에 내포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 Civil of Military Authority Extension(Business Interru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um paid, and subject to the Exclusions,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to which this Extension is attached, if this Policy covers Business Interruption, it is extended to cover the loss sustained by the Insured due to the necessary interruption of the Insured's business due to prevention of access to the insured location by order of a civil or military authority, provided that such order is a direct result of physical damage of the type insured by this Policy, to property of the type insured by this Policy situated within one statute mile of the insured location. This Policy does not provide coverage under this Extension for more than ( ) consecutive days.

#### 행정당국 및 군사기구 확장 조항(기업휴지 부문)

보험료의 납부와 이 증권의 면책조항, 보험조건 및 제한조건의 종속하에 이 확장조항이 첨부되며 기업휴지부문이 담보 받고 있다면 행정당국 또는 군사기구의 지시에 의해 피보험 소재지에 접근이 불허되어 그로인한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다면 본 특약은 해당손해를 담보합니다.

단, 그러한 명령이 피보험 소재지의 법정1마일 이내에 위치한 증권에서 담보하는 목적물에 대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유형의 물리적 손해의 직접적 결과이어야 합니다.

본 증권은 ( )일 이상 연속으로 이 확장담보에 따른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손해조항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용)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학교경영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에 의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6. 피보험자와 학생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9.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14.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6.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1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자 및 건설기계업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

에 적용하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수탁재물을 포함)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인격침해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피해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업원(근로자)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판매인 특별약관

### 제1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판매인 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거나 또는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 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임차자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6조(보험금의 부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주차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5. 차량출고 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업무내용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오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환경오염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해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실 및 기타 비용.

② 제1항은 적용될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손해액에 포함되어 보상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외선박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아래의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
2. 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또는 양하작업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전염병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전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아래 표에 기재된 병으로 한정합니다.

(표) 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류	
제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전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百日咳), 파상풍(破傷風), 홍역(紅疫),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結核), 한센병, 성홍열(猩紅熱),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쯤쯤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炭疽),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생산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생산물 및 이의 완성작업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실리카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실리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실리카(이산화규소)】**  
실리카란 광물, 이산화규소 등을 포함하는 여타 형태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실리카 함유 제품, 상품, 섬유 또는 물질 및 이로 부터 배출되는 가스, 수증기, 냄새와 규산 또는 규산 광물(모래, 석영, 슬레이트, 화강암, 플린트) 등을 포함합니다.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및 소음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파, 전자장(EMF)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무효력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스사업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합니다)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 용기 등이라 합니다)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6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용어풀이>

- |   |
|---|
| <p>① 「가스사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냉동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 및 신고를 한자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함</p> <p>② 「용기 등 제조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용기제조, 냉동기 제조, 특정설비 제조를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p> <p>③ 「가스사용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를 말함</p> <p>④ 「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p> <p>⑤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하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p> |
|---|

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함

⑥ 「수입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용품 또는 가스용기 등을 수입한 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⑥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⑦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 ⑧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⑨ 제8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⑩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⑪ 가스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⑫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보험증권상 아래 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의 지급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별도의 보상한도액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은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후유장애」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료가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을 맺을 때에 예납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1년 내에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와 이미 받은 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주의사항〉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특별약관 및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험의 종류 등) 제1항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특별약관” 과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을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를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신체손해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 조항> 제6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 조항> 제6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 조항>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2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보험증권상 아래 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의 지급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별도의 보상한도액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은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 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가하여 아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판매사업자·충전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제4조(보험금지급의 특례)

회사는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아 래 -

회사는 본 특약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서류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확인원」이 첨부된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특례기준」에서 정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사고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	---

<p>(용기가스) 소비자</p>	<p>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 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제외합니다.</p> <p>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의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li> <li>· 포장마차 등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li> <li>· 출장부패, 연회 등의 장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데우기 위해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li> <li>· 기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고정된 형태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li> </ul>
<p>공급설비</p>	<p>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li> <li>· 액화석유가스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li> </ul>
<p>소비설비</p>	<p>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li> <li>·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li> </ul>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초과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별약관(이하 “보장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손해금액은 “보장특별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대위권)**

회사는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별약관 제5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를 준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및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스시설시공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아래에 기재된 가스시설(이하 「가스시설」 이라 합니다) 시공 작업의 수행 또는 시공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

- 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인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가스시설의 시공자로서 인한 사고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제1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 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③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④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⑤ 피보험자가 시공중인 가스시설 시공작업 자체(시공작업과 관련하여 비치된 물건, 부품,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재물손해」
- ⑥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법령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시공한 가스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이 특별약관을 사용한 보험상품에 최초로 보험을 가입한 날 이전에 시공한 가스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최초로 보험을 가입한 날 이후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 시공한 가스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가스시설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시설 시공작업 자체(시공작업과 관련하여 비치된 물건, 부품,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재물손해」
- 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가. 「가스시설」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가스시설」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합니다.
- ⑥ 가스시설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가스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결함 있는 가스시설(가스시설이 완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포함합니다)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보험기간의 연장)**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휴업, 폐업 등의 사유(보험료 미납 등 보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스시설명 : 시공사명 : 시공지 주소 : 추정시공대수 : 예치보험료 : 최소보험료 :
---

**<용어의 정의>**

가스시설	「가스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에 규정한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보험가입)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자	「가스시설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 중 가스사용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공작업	「시공작업」이란 가스보일러 설치 및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관말부 연결공사를 포함한 가스배관공사를 말합니다. 가스관말부 연결공사라 함은 “보일러가 설치되는 실에 기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과 보일러를 연결하는 배관작업”을 말합니다.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①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업무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가스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 용어의 정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업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업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

## 종업원(근로자)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원자력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모든 원자로
-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나 우라늄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5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옹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해서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오염물 포함합니다.

#### 화재배상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담보부문 면책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차한 공간의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은 부담함에 합의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별도의 보상 한도액은 본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조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재정적 손실 보장제외 특별약관

회사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기인하지 않은 순수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주장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모든비용의 보상한도액 내 포함 특별약관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모든 비용은 스케줄에 명시된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됩니다.

####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손해의 범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3항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②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1항의 제1호의 손해 : 1 사고 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위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매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한 위 제1항의 제1호의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위 제1항의 제1호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②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④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⑤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임금이 실임금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 ⑥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4조(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2.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아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위 제1항의 제1호의 경우 :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로서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2. 위 제1항의 제2호의 경우 :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3. 위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없다고 인정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사용자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사용자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스공급 중단 또는 변동 특별약관

이 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가스공급이 중단 또는 변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장해 그리고/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확장 담보합니다.

다만,

- 1) 피보험자의 저장소나 배급공장 또는 배급장치에 대하여 적합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유지정비, 교체 또는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한 가스공급 중단 또는 변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의 저장량 또는 배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가스공급 중단 또는 변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있는 제3자 소유의 저장소나 배급공장, 또는 배급장비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부터 기인한 물리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가스공급 중단 또는 변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상 가중책임으로부터 기인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5)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모든 재정 손실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상기 조항을 근거로 배상청구에 대하여 면책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특별조항으로 인하여 스케줄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이 증액되지 않습니다.

본 특별조항에서 수정된 이외의 사항은 증권 상 보험조건을 따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제조물”이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제조물”은 피보험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호 및 1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 제4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II)

#### 제1조(사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 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18.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9.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1.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2.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3.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4.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5.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 26.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7.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8.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9.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0.피보험자의 종업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1.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2.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업무내용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이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⑥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⑫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⑭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⑮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⑯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⑰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⑱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⑲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⑳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㉑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 구내치료비지급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⑤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⑦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⑩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⑪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⑫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⑬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치료비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 진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	---

**주차장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단,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5항 제외) 및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

- 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⑤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⑥ 차량 출고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⑧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 ⑪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⑫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 구 조 : 면 적 : 권리관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 관리인여부
업무내용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

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⑥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⑧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⑩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⑫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 내용	명 칭 : 용 도 : 수 량 : 설치장소 :
업무 내용	업 무 명 : 관 리 자 수 :
보상한도액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용)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 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더라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일반조항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적용환율)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 제2조(보험금의 적용환율)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공동인수 특별약관

###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명	인수비율(금액)
-------	----------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분납)

- ①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 제2조(보험료의 납입)

-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니다. 다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하나의 사고(72 시간) 특별약관

### 제1조(하나의 사고 기준)

①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1. 지진, 분화
2.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3.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동일한 지진학적 또는 기상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③ 일련의 사고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한것으로 간주하며 그 시기는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예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CYBER LOSS LIMITED EXCLUSION CLAUSE (PROPERTY TREATY REINSURANCE) No.1 [LMA5410]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or any endorsement thereto,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loss, damage, liability,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 1.1 any loss of, alteration of, or damage to or a reduction in the functionality, availability or operation of a Computer System, unles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 1.2 any loss of use, reduction in functionality, repair, replacement, restoration or reproduction of any Data, including any amount pertaining to the value of such Data.
2. Subject to the other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contained 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will cover physical damage to property insured under the original policies and any Time Element Loss directly resulting therefrom where such physical damage is directly occasion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ils: fire, lightning, explosion, aircraft or vehicle impact, falling objects, windstorm, hail, tornado, cyclone, hurricane, earthquake, volcano, tsunami, flood, freeze or weight of snow

## Definitions

3. Computer System means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communications system, electronic dev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mart phone, laptop, tablet, wearable device), server, cloud or microcontroller including any similar system or any configuration of the aforementioned and including any associated input, output, data storage device,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4. Data means information, facts, concepts, code or any other information of any kind that is recorded or transmitted in a form to be used, accessed, processed, transmitted or stored by a Computer System.
5. Time Element Loss means business interruption, 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or any other consequential losses.

### 사이버손해 제한적 면책조항[LMA5410]

1. 본 계약 또는 관련 배서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항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피해, 배상책임, 비용 또는 경비는 그 성질을 불문하고 본 계약상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1.1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가용성 또는 운영에 대한 손실, 변경, 피해나 감소
  - 1.2 모든 데이터의 사용이익상실, 기능 손실, 복구, 대체, 복원 또는 재생산(데이터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등)
2. 원보험 계약상 부보 되는 재물에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피해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시간 요소 손실은 본 계약상 다른 조건 및 면책 조항 등이 고려되어 담보된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나 차량과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 낙하되는 물체에 의한 피해(aircraft or vehicle impact), 낙하물에 의한 피해, 강풍, 우박, 토네이도, 싸이클론, 허리케인,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홍수, 결빙, 적설 하중에 의한 피해

## 정의

3.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시스템, 전자 장치(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서버, 클라우드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등과 같은 시스템이나 구성 장치, 관련 입출력 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킹 장비, 또는 백업 장치를 의미한다.
  4.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 접근, 처리, 전송,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기록 및 전송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 사실, 개념, 코드를 의미한다.
  5. 시간 요소 손실은 기업휴지 손실, 간접기업휴지 손실 또는 기타 간접 손실을 의미한다.
- \* 본 재보험특약의 이해당사자 간에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기 영문조항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TERRITORIAL EXCLUSION ENDORSEMENT(BELARUS-RUSSIA-UKRAINE)

This endorsement modifies insurance provided by the Policy: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Policy or any endorsement thereto, including the Coverage Territory, Policy Territory, Territorial Limits or other similar provision, the following are excluded territories under this Policy:

- \* The Republic of Belarus:
- \* The Russian Federation a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or their territories, including territorial waters, or protectorates where they have legal control: legal control shall mean where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 \*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borders established as of the 199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cluding the Crimean Peninsula and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T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Excluded Territories”

Regardless of: (1) any location shown on this Policy, on the Statement of Locations or Values, or otherwise stated, (2) any newly acquired location or miscellaneous unnamed location, (3) any error or omission by any entity, (4) any coverage extension or additional coverage, (5) any definition that may contain one or more of the Excluded Territories, or (6) any change in sanction status, there shall be no coverage provided in any of the Excluded Territories, nor any coverage provided as a result of an event that occurs in any of the Excluded Territories.

The inclusion of one or more of the Excluded Territories in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olicy does not provide coverage for such geographic area.

Where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terms of this endorsement and the terms of the Policy, the terms of this endorsement shall apply, subject at all times to the application of any Sanctions clause.

### 담보지역 면책 특별약관

(벨라루스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이 특약은 보험증권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담보 지역, 보험증권상 지역, 담보 국가 및 기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여 보험증권 또는 특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은 이 보험증권 하에서 제외됩니다.

- \* 벨라루스 공화국:

\* 유엔에서 인정한 러시아 연방(또는 영해를 포함한 러시아 연방의 영토 또는 러시아가 법적으로 통제하는 보호국: 법적 통제는 유엔이 인정한 곳을 의미함)

\* 우크라이나(1991년 독립선언 시 설정된 국경에 따라 크림반도,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을 포함함) 이하 "제외 지역"으로 통칭합니다.

“(1)본 보험증권에 명기된 소재지 또는 가입금액/기타 명세에 포함되는 소재지, (2)신규 취득한 소재지, 기타 무기명 소재지, (3)개별적인 오류 또는 누락, (4)모든 확장 담보 또는 추가 담보, (5)하나 이상의 “제외 지역”을 포함하는 용어 정의, 또는 (6)어떠한 종류의 경제제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제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다른 조항에 하나 이상의 “제외 지역”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지리적 영역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조건과 보험증권상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경제제재 조항의 적용에 따라 이 특약의 조건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CYBER LOSS ABSOLUTE EXCLUSION CLAUSE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contract, this contract excludes any Cyber Loss.
2. Cyber Loss means any loss, damage, liability, expense, fines or penalties or any other amount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 2.1 the use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 2.2 the reduction in or loss of ability to use or operate any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or Data;
  - 2.3 access to, processing, transmission, storage or use of any Data;
  - 2.4 inability to access, process, transmit, store or use any Data;
  - 2.5 any threat of or any hoax relating to 2.1 to 2.4 above;
  - 2.6 any error or omission or accident in respect of any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or Data.
3. Computer System means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application, process, code, programme,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s system or electronic device owned or operated by the Insured or any other party. This includes any similar system and any associated input, output or data storage device or system,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4. Computer Network means a group of Computer System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or network facilities connected via a form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intranet and virtual private networks (VPN), allowing the networked computing devices to exchange Data.
5. Data means information used, accessed, processed, transmitted or stored by a Computer System.

6. When this clause forms part of a reinsurance contract, Insured shall be amended to read Original Insured.

IUA 09-081 17.05.2019

## Sabotage and Terrorism Exclusion (NMA2919)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or any endorsement thereto it is agreed that this reinsurance excludes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llowing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o the loss:

- (1) war, invasion, acts of foreign enemies,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civil war, rebellion, revolution, insurrection, civil commotion assuming the proportions of or amounting to an uprising, military or usurped power; or
- (2) any act of terrorism.

For the purpose of this exclusion, an act of terrorism means an activity, including the threat of an activity or the preparation for an activity, whether violent or nonviolent, that appears to be intended to (i) intimidate, coerce, or retaliate against any seg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r (ii) disrupt any segment of the economy, or (iii) influence the policy of a government by intimidation, coercion, or retaliation, or (iv) advance a 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or ethnic cause.

This endorsement also excludes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taken in controlling, preventing, suppressing or in any way relating to (1) and/or (2) above.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is endorsement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 전쟁 및 테러리즘 면책조항(NMA2919)

이 재보험계약 또는 여타 배서계약에 있어 배치되는 여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재보험계약은 다음의 사건 또는 원인(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발생함에 관계 없이)에 의해 직접, 간접적 발생하거나 다음의 사건 또는 원인에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침략, 외적에 의한 행동, 적대행위, 유사 전쟁(전쟁 선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란, 폭동, 혁명, 반란, 봉기에 해당하는 민요 등, 군사력 또는 여타 방법에 의한 정권 찬탈

(2) 여타의 테러리즘 행위. 이 배서의 적용에 있어 테러리즘은 그 목적 상 여타의 개인,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의한 위협 및 무력 및 억압의 사용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 이들 개인이나 집단이 여타의 정부 및 대중에 공포를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포함,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그리고 유사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나 정부와 연계되어 있거나, 이들을 대표하느냐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이 재보험계약에 있어 위의 (1)과 (2)와 관련해 여타의 방법으로 또는 통제적이고, 예방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취해지는 여타의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이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 비용과 손실, 피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보험자가 이와 같은 면책의 이유에 따라, 이번 재보험이 여타의 손실, 피해, 비용에 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재보험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약정의 일정 부분이 효력이 없거나 강제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 WEH Asbestos Exclusion Clause

A. This Policy only insures asbestos physically incorporated in an insured building or structure, and then only that part of the asbestos which has been physically damaged during the policy period by one of these Listed Perils :

Fire, Explosion, Lightning, Windstorm; Hail; Direct impact of vehicle, aircraft or vessel; Riot or civil commotion; Vandalism or malicious mischief; or accidental discharge of fire protective equipment  
This coverage is subject to all limitations in the policy to which this endorsement is attached and, in addition, to each of the following specific limitations:

1. The said building or structure must be insured under this policy for damage by that Listed Peril.
2. The Listed Peril must be the immediate, sole cause of the damage to the asbestos.
3. The Insured must report to the Company the existence and cost of the damage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Listed Peril first damaged the asbestos. However this policy does not insure any such damage first reported to Underwriters more than 12 (twelve) months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policy period.
4. Insurance under this policy in respect of asbestos shall not include any sum relating to:  
any faults in the design, manufacture or installation of the asbestos.  
asbestos not physically damaged by the Listed Peril including any governmental or regulatory authority direction or request of whatsoever nature relating to undamaged asbestos.

B. Except as set forth in the foregoing Section A, this policy does not insure asbestos or any sum relating thereto.

## WEH 석면 조항

A. 이 조항은 오직 다음과 같은 위험 하에서 보험기간 동안 석면과 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물, 구조물, 또한 물리적으로 손상된 석면의 부분만을 담보합니다.

화재, 폭발, 번개, 폭풍, 우박,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의 직접적인 영향, 폭동 또는 시민 소동, 기물 파손 또는 악의적인 장난, 또는 화재 보호 장비의 우연한 방전.

이 담보는 이 조항이 추가된 모든 약관의 제한 사항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에도 적용됩니다.

1. 건물이나 구조물이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한 손상을 위한 이 약관 하에서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위험은 즉각적이고 단독적인 석면의 피해로 인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석면이 손상되었을 때 즉시 언더라이터에게 손실과 손실의 비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험만기 후 12개월 이상 지난 후 언더라이터에게 보고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이 석면과 관련된 조항하의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i) 석면의 설계, 제조 또는 설치에 대한 결점.
  - (ii) 정부 또는 규제 당국의 지시 또는 손상되지 않은 석면에 관련된 요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손상되지 않은 석면.

B. 다음 섹션 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석면이나 다른 관련된 사항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Micro-Organism Exclusion Clause

This Policy does not insure any loss, damage, claim, cost, expense or other sum directly or indirectly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 mold, mildew, fungus, spores or other microorganism of any type, nature, or descrip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substance whose presence poses an actual or potential threat to human health. This Exclusion applies regardless whether there is (i) any physical loss or damage to insured property; (ii) any insured peril or cause, whether or no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iii) any loss of use, occupancy, or functionality; or (iv) any action requir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pair, replacement, removal, cleanup, abatement, disposal, relocation, or steps taken to address medical or legal concerns.

This Exclusion replaces and supersedes any provision in the Policy that provides insurance, in whole or in part, for these matters.

2791MAP00001

### 미생물 제외 조항

본 증권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청구, 비용, 지출 또는 기타 항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곰팡이, 균류, 포자 또는 모든 종류의, 자연적인, 또는 설명적인 여타의 미생물류를 포함하지만 그 미생물의 존재로 어떤 물질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미생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 조항은 다음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 (i) 보험의 목적물이 입은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 (ii) 현재 존재하거나 결과적으로 존재하게 될 보장위험 또는 사고원인
  - (iii) 사용손해, 점유손해, 기능손해, 또는
  - (iv) 모든 작업은 포함하되, 수리, 교체, 제거, 청소, 감소, 폐기, 재배치, 또는 의학적, 법적 영향에 대한 고려에 필요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행위
- 이 면책 조항은 상기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보험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대체합니다.

## CL356 Radioactive Contamination Clause

This policy does not cover any loss or damage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nuclear reaction nuclear radiation or radioactive contamination however such nuclear reaction nuclear radiation or radioactive contamination may have been caused \* NEVERTHELESS if Fire is an insured peril and a Fire arise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nuclear reaction nuclear radiation or radioactive contamination any loss or damage arising directly from that Fir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olicy) be covered EXCLUDING however all loss or damage caused by nuclear reaction nuclear radiation or radioactive contaminati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at Fire.

\* NOTE – If Fire is not an insured peril under this policy the words "NEVERTHELESS" to the end of the clause do not apply and should be disregarded

### 방사능오염 조항

본 보험에서는 핵반응, 핵 방사능,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일체의 손실 및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며, 핵반응, 핵 방사능, 방사능 오염으로 직간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담보합니다. 다만 그 화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핵반응, 핵방사능, 방사능 오염으로 기인된 모든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Downgrade Cancellation Clause

1. The Reinsured is entitled to cancel this policy at any time on a pro-rata basis:
  - A. if the Reinsurer publicly announces its intention to discontinue underwriting a class or category of business similar to this reinsurance policy; or
  - B. if the Reinsurer is required by any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to cease underwriting operations; or
  - C. if the Reinsur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elects to wind up, runoff its business, enter a scheme of arrangement, or enter into any form of bankruptcy protection or related formal or informal termination of its insurance operations; or

- D. if the Reinsurer is required or volunteers to enter into receivership, or has its authority to underwrite insurance withdrawn or terminated; or
  - E. if the Reinsurer incurs a material change in financial condition which, in the opinion of the Reinsured, is likely to affect the ability of the Reinsurer of this policy to pay claims.
  - F. If the Reinsurer should be rated at either below a Standard Poor's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of BBB- or below an A.M. Best's Rating of B+.
  - G. if, for a Reinsurer with no rating by Standard and Poor's or A.M. Best, in the judgment of the Reinsurance Department of the Reinsured which supervises Reinsurer's security, the security of such Reinsurer has materially deteriorated since inception of this contract.
2. The Reinsured is entitled to cancel this policy when the original policy is cancelled.
3. Cancellation under any of these conditions may be invoked at any time by the written notice from the Reinsured to the Reinsurer of this policy stating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of this policy. In the event of such cancellation, the Reinsurer shall pay the return premium within 30 days.

### 신용등급하향조정 취소 조항

- 1. 피재보험자는 비례기준으로 언제든지 이 증권을 취소할 수 있다.
  - A. 재보험자가 이 재보험정책과 유사한 업종의 언더라이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경우
  - B. 재보험자가 감독기관의 제재로 언더라이팅 운영을 중단한 경우
  - C. 재보험자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철수한 경우, 파산방어등의 경우도 포함
  - D. 재보험자가 법정관리 상태로 갈 때
  - E. 재보험자가 재무상태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
  - F. 재보험자 신용등급이 Standard Poor's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of BBB- A.M. Best's Rating of B+ 이하로 갈 경우.
  - G. 재보험자가 Standard and Poor's or A.M. Best 등급이 없거나, Reinsurance Department of the Reinsured 보안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 2. 원증권이 취소되는 때 이 증권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 3.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험료 반환

**No Claim Bonus (    )% |**

It is hereby understood and agreed that (    ) percent of the total premium paid to the Insurer during the policy period shall be returned to the insured after the expiry date of the policy subject to the condition of no claim under the policy.

## 무사고 환급조항

이 증권에서 손해가 없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보험자에게 지불한 총 보험료의 ( )퍼센트를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환급합니다.

### Testing and Commissioning Clause

It is hereby noted and agreed that this insurance does not cove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roperty in course of construction or erection, dismantling, revamp or undergoing testing or commissioning including mechanical performance testing and any business interruption resulting therefrom. Acceptance of property hereon is subject to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following procedures ;

1. Mechanical completion including Testing
2. Testing & commissioning.
3. Official acceptance by the Insured following formal hand over without reservation or waiver of guarantee conditions. It is being understood that no equipment faults or punch list items affecting operational integrity of the plant are outstanding and that no temporary structures and no modifications remain. NOTWITHSTANDING the above, attachment of property and plant hereon to be agreed by the company, it is further noted and agreed that terms and conditions to be reviewed if required by the company. It is further noted and agreed that the above provisions do not apply to normal routine maintenance activities and scheduled turnarounds

## 재물 및 공장의 시운전 조항

건설, 조립, 해체, 개조, 기계적 성능검사를 포함한 검사 및 시운전의 진행 과정 중 발생한 재물 손해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휴지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상기 언급한 과정 중에 있는 재물이 이 보험에 정상적으로 부보되기 위하여는 다음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1. 기계 완공 및 검사
2. 시운전
3. 피보험자가 사후 보증 조건을 유보 또는 포기하지 않은 공식적인 인수의 완료.

공장을 가동하는데 지장을 주는 장비 결함이나 미결 항목이 없고, 임시 건물 구조물이나 어떤 변경사항도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물 및 공장을 시운전 후 이 보험증권에 추가로 부보할 때에는 재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하며, 재보험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 기간과 조건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항은 통상의 유지보수 활동이나 예정된 분해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PROPERTY TREATY (RE)INSURANCE) [LMA5394]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ny loss, damage, liability, claim,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hereto.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damage to human health or human welfare or can cause or threaten damage to, deterioration of, loss of value of, marketability of or loss of use of property.

#### 감염병 면책조항 (재물 특약 (재)보험) [LMA5394]

1. 본 (재)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피해, 배상책임, 클레임, 비용 또는 경비는 그 성질을 불문하고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손실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된다.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 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이 포함되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인간의 건강이나 안위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 손상, 가치 상실, 상품성 훼손, 사용손실을 야기하거나 이러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경우

####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s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re)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The below version in Korean language is for translation purpose only.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which is original) and the Korean version (which is for translation purpose only), the English version always prevails and shall be the only original contractual wording binding on the parties in case of any dispute.

#### [LMA5399] 감염병 면책 조항

1. 본 (재)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출재)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이하의 국문은 위 영문 원본을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본입니다. 영문본(원본)과 국문본(번역본) 사이에 여하한 상이점이 있을 경우, 언제나 영문본이 우선하며, 오로지 영문본만이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의 유일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됩니다.

## Russia, Ukraine and Belarus territorial Exclusion [LMA5583A]

Insurers do not provide and this Policy does not afford any benefits or cover in respect of any liability, damage, loss, cost, expense (or any item/matter insured, including under any insuring agreement, extension or endorsement):

1. originating from an Excluded Territory;
2. arising from any event or incident occurring in an Excluded Territory;
3. arising from any claim or investigation initiated or maintained in an Excluded Territory; and/or
4. arising from the actions of any government or governmental body or agency or government owned or controlled business of an Excluded Territory.

For the purposes of this exclusion, Excluded Territory shall mean Russia, Belarus or Ukraine (including Crimea and the Luhansk and Donetsk regions), including their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any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In the event all or any part of this exclusion conflicts with any other part of the Policy then this exclusion shall prevail, subject always to the application of any sanctions exclusion/clause.

References in this exclusion to “event”, “incident”, “claim” and/or “investigation” shall be interpret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any same or similar defined words used in the Policy.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담보지역 면책 특별약관 [LMA5583A]

보험사는 본 보험에서 책임, 손해, 손실, 비용, 비용(또는 보험 계약, 연장 또는 보증을 포함하여 보험 항목/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나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제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2. 제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3. 제외 지역에서 시작되거나 유지되는 청구 또는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및/또는
4. 제외 지역의 정부, 정부 기관, 기관 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본 제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제외 지역은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우크라이나(크림반도,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역 포함)를 의미하며 이들의 영토, 소유물, 국가 또는 정치적 구역도 포함됩니다.

본 제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책의 다른 부분과 충돌하는 경우 항상 제재 제외/조항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본 제외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제외 항목에서 "사건(event)", "사건(incident)", "청구" 및/또는 "조사"에 대한 언급은 정책에 사용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의 단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별표1】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1급	3,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li> <li>2. 척추체 분쇄성 골절</li> <li>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li> <li>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li> <li>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li> <li>6. 고도의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li> <li>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li> <li>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li> <li>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li> <li>10. 팔다리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이식술(피부·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li> <li>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팔뼈몸통 분쇄성 골절</li> <li>2. 척추체의 뼈기모양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li> <li>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li> <li>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li> <li>5. 무릎관절 탈구</li> <li>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8. 엉치엉덩관절 탈구</li> <li>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3급	1,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팔뼈목 골절</li> <li>2. 위팔뼈 관절용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li> <li>4. 수근 손배뼈 골절</li> <li>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li> <li>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li> <li>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li> <li>8. 정강이뼈 복사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li> <li>9. 발목발허리뼈사이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li> <li>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용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li> <li>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li> <li>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li> <li>13. 중증도의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li> <li>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4급	1,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넓적다리뼈 관절용기 골절</li> <li>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li> <li>3. 목말뼈목 골절</li> <li>4. 슬개인대 파열</li> <li>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li> </ol>

		<p>힘줄을 말한다) 골절 파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위팔뼈 가쪽위관절용기 뼈가 어긋나는 골절</li> <li>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li> <li>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li> <li>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5급	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말한다)</li> <li>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li> <li>3. 무릎관절부위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li> <li>4. 발허리뼈 골절</li> <li>5. 위팔뼈몸통 골절</li> <li>6. 노뼈 먼쪽 골절</li> <li>7. 자뼈 몸쪽부위 골절</li> <li>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해</li> <li>9.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li> <li>10.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li> <li>11. 아킬레스힘줄 파열</li> <li>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li> <li>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6급	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아의 다리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li> <li>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골절</li> <li>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골절</li> <li>4. 다발성 종족골 골절</li> <li>5. 두덩뼈·궁등뼈·장골의 단일 골절</li> <li>6. 단순 슬개골 골절</li> <li>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 골절은 제외한다)</li> <li>8.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li> <li>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li> <li>10.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li> <li>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li> <li>12.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li> <li>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li> <li>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7급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아의 팔 장관골 중간부분 골절</li> <li>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li> <li>3. 위팔뼈 절상과 굽힘 골절</li> <li>4. 엉덩관절 탈구</li> <li>5. 어깨관절 탈구</li> <li>6. 봉우리빗장관절 사이 관절 탈구</li> <li>7. 발목관절 탈구</li> <li>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li> <li>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8급	3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팔뼈 위관절용기 펴 골절</li> <li>2. 빗장뼈 골절</li> <li>3. 팔꿈치관절 탈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어깨뼈 골절</li> <li>5.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li> <li>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li> <li>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8. 다발성 갈비뼈 골절</li> <li>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li> <li>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li> <li>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9급	24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li> <li>2. 노뼈 뼈머리 골절</li> <li>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li> <li>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5. 손바닥뼈 골절</li> <li>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li> <li>7. 족근골 골절(목말뼈, 중골은 제외한다)</li> <li>8. 중족골 골절</li> <li>9. 발목관절부위 뺨</li> <li>10. 갈비뼈 골절</li> <li>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뼈어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li> <li>12. 손목관절 탈구</li> <li>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10급	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li> <li>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 관절 탈구</li> <li>3. 손목뼈 손바닥뼈 사이 관절 탈구</li> <li>4. 손목관절부위 뺨</li> <li>5. 모든 불안전 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li> <li>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11급	16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뺨</li> <li>2. 손가락관절 탈구 및 뺨</li> <li>3. 코뼈 골절</li> <li>4. 손가락뼈 골절</li> <li>5. 발가락뼈 골절</li> <li>6. 뇌진탕</li> <li>7. 고막 파열</li> <li>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li>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12급	12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li> <li>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li> <li>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ol>
13급	8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li> <li>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li> <li>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ol>
14급	5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li> <li>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li> <li>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li> </ol>

※ 비 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개발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骨片)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 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2】 후유장애등급별 지급보험금액

등 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급	1억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이 실명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5. 반신마비가 된 사람</li> <li>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2급	1억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ol>
3급	1억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ol>
4급	1억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7. 두 발을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li> </ol>
5급	9,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ol>
6급	7,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ol>
7급	6,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li> <li>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li> <li>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li> <li>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li> </ol>
8급	4,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li> <li>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li> <li>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li> <li>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li> </ol>
9급	3,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3. 두 눈에 한쪽시야결손·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li> <li>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li> <li>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li> <li>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li> </ol>
10급	2,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li> <li>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li> <li>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li> <li>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li> <li>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ol>
11급	2,3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이 모두 근점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li> <li>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li> <li>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li> <li>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12급	1,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근점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li> <li>5. 빗장뼈·흉골(복장뼈)·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li> <li>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li> <li>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li> </ol>
13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쪽 눈에 한쪽시야결손,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li> <li>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li> <li>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li> <li>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li> <li>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li> <li>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ol>
14급	1,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li> <li>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li> <li>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li> <li>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가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